

14회 세계사형폐지의 날 기념  
20대 국회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제언

# 사형제도의 완전한 폐지와 그 이후

# STOP

2016년 10월 10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1부. 세계사형폐지의 날 기념식

사 회 :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인사말 : 유흥식 주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장, 대전교구장

국회, 야3당 대표자

사형폐지특별법 공동발의 의원

김부겸 사형폐지특별법 대표발의 의원

## 2부. 사형제도의 완전한 폐지와 그 이후

사 회 : 김형태 변호사 (사형폐지범종교인연합 집행위원장)

기조발제 : 한인섭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대 인권센터장)

토 론 : 홍성수 (숙명여대 법대 교수)

이유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

공동주최

국회의원 김부겸, 한국천주교주교회의정의평화위원회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14회 세계사형폐지의날 기념  
20대 국회 사형제도폐지를 위한 제언



# 사형제도의 완전한 폐지와 그 이후

일시 ● 2016년 10월 10일(월)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순 서

1부. 세계사형폐지의 날 기념식	
사회 :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인사말	유흥식 주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장, 대전교구장
	하태훈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참여연대 공동대표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상민 의원 사형제도폐지특별법 공동발의
	김부겸 의원 사형제도폐지특별법 대표발의
2부. 사형제도의 완전한 폐지와 그 이후	
사회 : 김형태 변호사 (사형폐지범종교인연합 집행위원장)	
기조발제 : 한인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대 인권센터장)	
토론	홍성수 (숙명여대 법대 교수)
	이유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김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

# 1부

## 세계사형폐지의 날 기념식

사회 :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 축사

●  
정세균 | 국회의장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장 정세균입니다.

‘세계사형폐지의 날’이 올해로 14회를 맞았습니다. 뜻 깊은 날, 행사를 공동주최 해주신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와 김부겸 의원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흉악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사형집행에 대한 여론이 들끓습니다. 그 분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형은 인권보장의 시간을 역행하는 것일 뿐 범죄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형제를 실시하면 범죄 억제 효과가 있을 것이라 예측합니다. 하지만 사형제 존치와 범죄예방효과의 상관관계도 증명된 바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사형에 대한 논의를 넘어 범죄 예방·원조 시스템을 갖추는 데에 많은 힘을 쏟아야 합니다.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는 분명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각종 사회안전망 확충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범죄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대책이 뒤따라야 합니다. 보여주기식 치료가 아니라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보조해주어야 합니다.

사형폐지법안은 15대 국회부터 발의되어 지난 19대 국회까지 이어졌습니다. 여야를 초월해 생명존중과 인권보호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의원들께서 사형폐지에 관한 법안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사형제도 폐지에 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으신 사형폐지범종교인연합 집행위원장 김형태 변호사님과 기초발제를 해주실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한인섭 교수님을 비롯해 토론을 해주실 숙명여대 홍성수 교수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유정 변호사님,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김희진 사무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사형제도 폐지에 관심을 갖고 참석해주신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10.10  
국회의장 정세균

## 죽음을 넘은 생명으로!

유흥식 | 주교 한국천주교주교회의정의평화위원장, 대전교구장

사랑과 평화, 정의의 하느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유흥식 주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14회 세계 사형폐지의 날’을 기념하는 자리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20대 국회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부끄럽고 죄스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참으로 극악무도한 잔인한 사건들이 연일 보도됩니다. 6살 지인의 딸을 때리고 굶기고 테이프로 묶어 방치하고 죽인 후에도 시신을 태우고 불에 탄 시신의 유골을 처참히 훼손했습니다. 자신에게 아무런 해를 입히지 않은 어린 아이를, 지인의 아이를... 그 아이가 얼마나 외롭고 무섭고 아팠을까를 생각만 해도 가슴이 멍멍해집니다. 도저히 사람이 제 정신으로 한 일이라고 받아들일 없는 잔인함입니다. 이 외에도 생면부지의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거나, 자기 가족을 죽이는 사건, 친구를 죽이는 중학생... 이 현실 앞에, 희생된 분들의 가족이 받을 상처와 분노를 생각해서라도 살인자를 극형에 처해야 한다는 주장에 마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 사회의 또 다른 현실 지표들을 살펴봅시다. 12년째

유지하는 OECD 국가 중 최고의 자살률, 높은 부패지수, 높아지는 실업률, 높은 조이혼율, 낮은 출산율 등 이 모든 수치들이 잔인한 범죄와 무관할까요?

여기서 잠시 눈을 돌려 희망적인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 교육을 통해 윤리와 도덕성이 높은 인성 바른 구성원들이 배출된다면, 만약 교육을 통해 기술 능력만 우수한 사람이 아니라 사회 성원으로서의 책임감과 공동선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 성원들이 많아진다면, 만약 나도 열심히 노력하고 법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살면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사회라면, 만약 부정과 편법은 자신과 사회를 병들고 망하게 하는 자각이 넓고 깊게 확산된다면, 만약 어떤 경우에 육체적, 정신적 장애와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사회의 손길이 나를 도와주리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다면, 그렇다면 위의 모든 수치들이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런 변화가 가능할까요?

여기 모인 모두는 사회를 지도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법을 만들어 사회의 규범을 확립하고, 정치를 통해 국민의 행복을 증진하며, 교육을 통해 미래를 책임질 건실한 구성원을 양성하는 일들과 결코 무관할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부정적인 사회현실이 자신의 존재지위와 결코 무관할 수 없는 우리입니다. 저 끔찍한 사건들이 한 개인의 분노 조절 장애나 비정상적인 인성이라는 개인적 책임으로 간주될 수 없고, 사형제라는 죽음 장치로 간단히 처리될 수 없는 이유가 명백한 우리 책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문화이며, 광란의 도가니입니다. 이 문화와 분위기를 생명의 문화, 건실한 희망의 용광로로 만들어 가는 일이 사형제 폐지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지닙니다. 생명 값을 생명을 죽임으로써 계산하는 죽음의 문화에서 생명의 가치를 논할 수 없습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어도 생명이기에 그 소중함을 인정받는 살림의 문화로 갈 때, 그 역설이 죽음의 씨앗을 죽이고 생명 존중의 꽃을 피울 것입니다.

가톨릭교회는 2017년을 ‘자비의 특별희년’으로 선포하고 전 세계 신자들의 반성과 변화, 용서의 실천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주장하는 용서의 출발점은 죄의 인정입니다. 이 때 용서는 죄가 마치 없던 것처럼 간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분노가 그를 헤치지 않고, 그가 다시 한 번 제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예를 들겠습니다. 1815년 천주교 박해가 일어날 당시의 일입니다. 신자들의 공동체에서 그 호의에 의지해서 살던 전치수라는 인물이 신자들을 밀고해서 한밑천을 장만합니다. 때문에 아주 많은 신자들이 감옥에 갇히고 죽음에 처해졌습니다. 이렇게 맹활약하며 밀고로 큰돈을 번 그가 다른 범죄를 저질러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를 심문한 감사는 그의 행적과 죄상을 매우 나쁘게 보아 그를 감옥에서 굶겨 죽이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마침 그가 갇힌 감옥에는 그의 밀고로 고초를 받던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굶어죽거나 맞아죽어야 할 전치수는, 그런데 그가 밀고한 사람들이 자신의 양식을 나누어 주어 굶어죽지 않았습니다. 그 후 전치수가 석방될 때 감사는 또다시 그에게 알몸으로 나가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의 밀고로 인해 곧 죽을 상황에 빠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옷을 내어주었습니다.

저는 전치수가 자신의 죄를 잊거나 또 죄를 지었으리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를 지켜본 사람들이, 그리고 그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그 죄는 그가 사형 당했을 경우보다 더 크게 인식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용서의 힘이며 사랑의 힘입니다. 처벌보다 무섭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힘입니다.

용기를 품고, 대한민국 정치에 철학과 희망이 있음을 보여주는 선택이 오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죽음의 문화를 살림의 문화, 치유의 문화, 생명의 문화로 바꾸는 전환이 사형제 폐지를 위한 공동발의를 통해 그리고 그 법안의 궁극적 통과와 집행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강력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희망합니다. 그리하여 분노와 광란과 통곡의 소리가 잠잠해지며 그 자리에 서로를 위로하고 건강한 희망의 땀방울을 맺는 노동의 기쁨이, 내일을 함께 꿈꾸는 가족의 웃음이 가득차기를 기대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 사회의 지도자들이 이제라도 현재의 상황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죽음의 거센 파도를 거슬러 생명의 문화를 꽃피우기를 바라며 인사드립니다.

2016년 10월 10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천주교 대전교구장 주교 유흥식 라자로

## 死刑, 너 사형감이야



하태훈 |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참여연대 공동대표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죽여 놓고도 여태 목숨이 붙어 있는 사형, 그야말로 사형 감입니다.

한둘도 아닌 천 몇 백 명의 생명을 앗아가고도 지금까지 살아있다니 그 목숨 참 질기기도 합니다. 아이러니 하게도 흉악범들이 등장할 때마다 존재는 빛이 나고 사람들의 입에서 찬미하는 목소리가 들리기도 하니, 아직도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차례 사형폐지 법안이 발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1997년부터는 식물인간처럼 숨은 쉬지만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입니다.

오늘 제14회 세계사형폐지의 날을 맞아 20대 국회가 사형폐지라는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이를 기념하고 사형폐지를 촉구하기 위하여 ‘사형제도의 완전한 폐지와 그 이후’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형폐지 법안을 대표발의하신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국회의원님께 감사드리고, 반드시 사형제도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는데 앞장 서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제 사형폐지는 국제사회의 대세가 되었습니다. 실제 우리가 따라가고 싶어 하는 미국도 사형제를 폐지하거나 사형집행 건수를 줄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세계적으로 사형집행이 가장 많은 중국도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구성요건을 대폭 줄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인정받았지만, 우리나라처럼 사형 제도를 유지하면서 사형이 법정형인 범죄구성요건이 많은 나라도 없습니다. 사형제를 존치하는 나라는 유럽연합(EU)의 회원국이 될 수도 없고 EU와의 교역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EU국가로부터 인도받을 수도 없습니다.

실체도 불분명한 국민의 법 감정에 기대어 더 이상 머뭇거릴 일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여론과 사형이 흉악범죄를 막아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등에 업고 버틸 수 있는 때는 지났습니다. 또 다시 국제사회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따가운 시선 때문만은 아닙니다. 법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박탈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생명의 고귀함과 유일무이함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북파공작원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된들, 사법살인으로 불리는 인혁당 피해자가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아낸들 그들이 살아 돌아올 수 있습니까? 수많은 오판의 잔인함을 떠올리지 않더라도 국민을 생명을 박탈하는 극형을 유지하는 것이 과연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식물인간의 생명이든, 살인자의 생명이든 그 누구의 생명이라도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합니다. 국가가 법의 이름으로 행하는 살인을 멈춘다면 국민들에게 생명의 존귀함을 일깨워줄 것이고, 그것이 살인과 폭력을 멈추게 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이제 사형제도의 수명이 다했음을 선언해야 할 때입니다. 정작 사형이 선고되고 집행되어야 할 대상은 바로 사형제도입니다.

다시 한 번 오늘의 뜻있는 행사를 주최하신 김부겸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20대 국회가 사형폐지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오늘 세미나에서 사회,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6년 10월 10일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공동대표

## 축사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추미애입니다.

제14회 '세계사형폐지의 날'을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하며, 기념행사를 준비해주신 우리당 김부겸 의원님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사실상 사형 폐지국'입니다.

우리나라는 1998년 김대중 대통령 집권 이후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민주정부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고, 이에 2007년부터 '사실상 사형 폐지국'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국제엠네스티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모든 범

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102개국, '일반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6개국이며, 우리처럼 '사실상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32개국입니다.

그러나 사형제도 폐지는 법적으로 여전히 미완의 과제입니다.

사형제도는 모든 기본권 중에서도 최우선인 생명권을 박탈한다는 점, 억울하게 누명을 쓴 채 사형이 집행된 경우 되돌릴 수 없다는 점, 형벌의 주목적인 참회와 갱생을 포기한다는 점에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에서도 제15대 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나, 법적으로는 여전히 사형제도가 존치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세계적 흐름에 맞춰 '인권 선진국'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사형제도 폐지는 이미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2014년 12월 UN총회에서도 사형에 대한 집행 유예 결의를 다시금 채택하며 전 세계에 사형 집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자들의 정당으로서, 앞으로도 인권과 민생이 꽃피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앞장설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도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지길 바라며, 나아가 실질적인 입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길 기대합니다. 함께하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2016. 10. 10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추미애

## 제14회 세계 사형폐지의 날 기념식 인사말씀



박지원 |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박지원입니다.

오늘 제14회 세계 사형폐지의 날을 맞이하여 사형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기 위한 토론회에 참석하여 인사말씀을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기념식과 토론회를 준비하여 주신 김부겸 의원님과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국은 사형제도가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1997년 12월 30일 사형수 23명에게 사형이 집행된 이래,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서 국제엠네스티에서는 2007년 12월 한국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사형은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인간은 자연법적으로,

그리고 천부적으로 보장된 ‘생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상을 기초로 우리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합니다. 그런데 법률로써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빼앗을 수 있다면, 이는 크나큰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로 불완전한 사법시스템과 잘못된 판결에 의해 무고한 사람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다면, 그 순간,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법질서의 근거인 법률의 존재가치도 사라지고 맙니다. 또한, 사형 제도를 강화하여도 범죄율 감소에 큰 영향이 없다는 통계적 근거도 있습니다.

한편, 사형 집행은 반대하지만 사형제도 폐지를 반대하는 여론도 적지 않습니다. 사형제도 존속을 주장하는 입장을 살펴보면, 체포되어 복역한 흉악범들이 언제인가 사회로 다시 나올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이러한 사형제 폐지 반대여론과 불안감을 해소하여 사형제도 완전폐지를 실현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0월 10일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박지원

## 제14회 세계사형폐지의 날 기념 축사



노회찬 | 정의당 원내대표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정의당 원내대표 노회찬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사형제도 폐지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저 역시 예전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사형제 폐지 법안을 제출했으나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국정감사에서 법사위원들이 중점적으로 질의하는 것 중 하나가 법 집행의 합법성 및 합리성

입니다. 국가기관의 행위가 이중 어느 하나의 기준에서라도 벗어난다면 큰 문제제기를 받습니다. 그러나, 합법성과 합리성 외에 또한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법 집행의 목적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도구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회의 질서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법입니다. 사형제도 외의 방법으로 사회 질서와 정의를 지킬 수 있다면 사형의 존재 이유를 찾기 힘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형제도는 과도한 법치일 뿐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30일 이후 20년 가까이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사형제도가 폐지돼야 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는 폐지가 되었다 하더라도 사형제도가 남아있는 한 언젠가 도 사형제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사형이 악용되거나 오용되었던 수많은 사례들은 이 제도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또한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를 말해줍니다.

더불어, 사형제도가 형식적으로는 국가의 결정이라는 모습을 취한다 해도, 결국 사형선고를 내리는 주체는 판사 개인입니다. 한 개인이 타인의 목숨을 빼앗을 근거는 윤리나 도덕, 그 어떤 면에서도 없습니다. 만약 사형존치의 근거로 충분히 합리적이고 현명한 사법부의 존재를 말한다면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특별한 개인이나 뛰어난 소수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지혜가 결과적으로 옳은 사회를 만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수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도 헤쳐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인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사형제 폐지는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 사형이 폐지돼야 한다고 믿는 많은 분들의 뜻이 꽃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자리가 사형 폐지의 여러 근거가 서로 만나고, 합일하는 과정이기를 또한 바랍니다. 국회의원으로서는, 이 땅의 한 시민으로서 사형제 폐지의 길에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축사



나경원 | 새누리당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나경원입니다.

14회 세계사형폐지의 날을 맞이하여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뜻 깊은 행사를 마련해주신 김부겸 의원님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를 비롯한 전문가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형제도는 헌법이 명시하는 인간의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우선인 생명권을 박탈하는 제도입니다. 국제사면위원회에 따르면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총 98개국이며, 일반범죄의 사형 폐지국은 7개국,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

이 “사실상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35개국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지난 10년 동안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인권침해의 소지가 다분한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발전과 인권은 서로 따로 떼어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대한민국은 경제발전으로서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발전을 통해 여러 나라에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인권문제에서도 국제사회가 기대하는 기준에 맞추어 인권선진국의 대열에 올라서야 할 때입니다.

국회는 그동안 사형폐지법안을 두고 여러 차례 도전과 시련을 겪어왔습니다. 1999년 사형폐지 법안이 처음으로 발의된 이래 20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거듭 벽에 부딪혔습니다.

잇따른 무산에도 불구하고 이번 20대 국회는 사형제도 폐지를 위해서 다시 한번 뜻을 모으고자 학계, 법조인, 비정부기구 관계자 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사형제도의 완전한 폐지와 그 이후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 반발의 문턱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오늘 토론회는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어느 주제 보다 찬반 논쟁이 뜨거운 사형제도 폐지에 대하여 지혜롭게 실질적인 해법을 찾는 생산적인 자리가 되길 기대하면서 끝으로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신 전문가 여러분들과 내·외빈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10월 10일  
국회의원 나 경 원

## 축사



김부겸 | 더불어민주당 사형제도폐지특별법 대표발의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김부겸입니다.

‘생명과 인권 존중의 문화’를 우리 공동체에 안착시키고자 힘써 오신 여러분들과 귀한 자리를 함께 하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형제도 폐지는 거부할 수 없는 인류 문명의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도 1997년 12월 이후 단 한차례의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의 사형폐지 국가’로 분류됩니다. 이제 우리는 ‘완전한 사형폐지 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형제도 폐지를 향한 입법 노력은 15대 국회였던 1999년부터 매회 끊이지 않고 진행되어 왔으며, 저도 18대 국회에서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형제 폐지에 관한 논의가 진전되는 듯 하다가도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잔인한 범죄가 발생하면, 다시 멈춰서는 일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사형이 중대한 범죄를 예방한다는 결정적 증거가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사형을 통한 질서의 유지가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 간의 존중과 따뜻한 관심, 사회안전망 확충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이 되어야 함을 믿고 있습니다. 사형집행은 결코 범죄자의 교정, 피해자 가족의 고통, 그리고 공동체의 병폐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함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는 12월 10일, ‘세계 인권 선언의 날’을 맞아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을 다시 대표 발의할 예정입니다. 아직 사형제도의 완전한 폐지에 선뜻 동의하지 못하는 분들의 마음도 충분히 헤아리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범죄는 처벌을 강화하고,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는 보호와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이들이 깊은 상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의 복귀를 돕는 내용을 다룰 계획입니다.

오늘의 행사 준비는 물론이거니와 생명 존중의 문화를 앞장서서 이끌어가고 계신 유홍식 주교님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관계자 여러분들께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발걸음 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대한민국이 생명, 상생, 공존의 공동체로 나아가는데 끝까지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2부

## 사형제도의 완전한 폐지와 그 이후

사회 : 김형태 변호사 (사형폐지범종교인연합 집행위원장)

## 사형의 법률적 폐지를 향하여



한인섭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인권센터장

2016년 10월 10일 현재. 이 글은 2015. 11.23.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최한 “사형폐지에 관한 공청회”에서 필자의 발표를 보완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그동안 사형폐지를 위해 구심점이 되어 주신 사형 폐지범종교인연합, 천주교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여러분. 제20대 국회에서 사형폐지의 입법화를 위하여 이렇게 모임을 가지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살인자에게는 사형! 이는 누구에게나 있는 원초적 감정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문명 단계에서 어느 나라도 그렇게 <살인=사형>이라는 방식으로 처형을 하지 않습니다. 사형은 기본적 형벌로서의 위치를 거의 상실하고, 극히 예외적으로만 실행될 최후의 수단으로 물러서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사형제를 법률적으로 유지하고 있지만, 점차 처형의 빈도를 줄여오다가, 1998년부터는 사형 집행을 멈추었습니다. 2015년 한해동안 제1심

에서 사형을 판결한 건수는 하나도 없습니다. 대법원은 2015년 8월에 사형을 확정판결이 하나 있는데, 이는 대법원으로서 2년 7개월만의 일이라고 합니다. 2016년 들어 대법원은 소위 윤일병 사건에 대해 사형을 확정판결을 하나 내렸는데, 그에 대해 4인의 대법관이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2016년까지 18년에 걸친 우리의 체험은 사형에 집착하지 않고도 정상적인 형벌 집행이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그만큼 사형에의 의존도는 실무상으로도 고사(枯死)하고 있는 중이며, 사형이 폐지되어도 종신형 혹은 (중)무기형을 통해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이제 ‘사실상의 사형폐지국’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법률상 사형폐지국’으로 발돋움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1. 사형 폐지는 세계적 추세입니다

사형 폐지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법률로 사형을 폐지한 나라가 100개국이고,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는 나라가 40개국입니다. 200개국가 중에서 140개국이 사형을 기본형벌로 쓰지 않고, (법률상 혹은 실질적으로) 폐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UN 기구들도 사형 폐지 결의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모든 유럽국가들이 사형을 폐지했습니다.

사형을 두고 있는 미국에서도 20개주는 사형을 폐지했고, 사형 폐지 주는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형을 집행하는 주는 미국 남부의 몇 개 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형존치주에서도 사형집행의 정지(moratorium)의 추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국가들에서 사형을 기본형벌로서 집착하는 나라는 중국, 북한, 베트남 등 사회주의권입니다. 필리핀은 민주화의 초입에 사형을 폐지했고, 몽골은 최근 사형을 폐지했습니다.

이슬람 국가들은 대개 사형을 두고 있는데, 그중 몇몇은 잔혹한 집행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일본은 사형을 집행하고 있으며, 대만은 2000년 초반 사형집행을 몇 년간 중단했다가 지금 재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형의 폐지 및 중단은 전세계적인 흐름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으며, 앞으로 그 추세는 역진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 2. 종신형, 무기형은 사형에 대한 확실하고 효과적인 대안입니다.

사형을 폐지한다고 흉악범을 풀어주자는게 아닙니다. 흉악범은 종신형이나 중무기형으로 복역하게 될 것입니다. 폐쇄교도소는 흉악범의 재범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로서 충분한 기능을 발휘합니다.

교정당국은 충분히 재범방지를 위해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합니다. 살인죄를 짓고 교도소 복역기간 중에 흉악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효과적인 교정관리를 통해 봉쇄할 수 있습니다.

### 3. 흉악범죄에 대한 예방효과를 사형이란 수단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형을 폐지하면 장래의 흉악범죄를 막을 수 없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사실 흉악범들이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은 범행 전후에 체포될 우려, 나머지 범행까지 다 드러날 우려 등입니다. 체포된 후 길고 긴 재판과정을 거쳐 사형이 확정되고, 또 훨씬 긴 복역기간을 거쳐 자신에게 닥칠지도 모를 사형을 겁내어 살인을 억제할 것이라는 장기적 비전을 갖지 못합니다. 그 정도의 장기적 안목을 갖고 자신의 행동을 치밀하게 조정할 내적 통제능력이 있는 자는 흉악범죄를 저지려 리 없습니다.

흉악범들은 대개 눈앞의 범죄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것 이외에는 탄생각을 하지 못하는 심리적 터널 속에 갇혀 있습니다. 체포될 때는 인간이기를 포기한 야수처럼 거친 자도 수형생활을 통해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김대두, 주영형, 지존파 등 그 예는 우리의 역대 사형수 중에서도 충분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 4. 피해자의 법감정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사형이란 방법이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법감정에 비추어 사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피해자와 가족의 상실감과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며, 범죄자에 대한 분노는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흉악범행을 막지 못한 데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아픔에 대한 공감과 위로를 함께 나누고, 피해회복을 위한 정신적·물질적 지원에도 앞장서야 합니다.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우선 필요한 것은 그 아픔을 함께 하고, 함께 치유에 나서는 이웃공동체입니다.

정의로운 처벌은 피해자(가족)의 치유의 한 과정으로서도 필수적이지만, 그 정의가 반드시 사형이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범죄사실이 확인되고, 진범이

잡혀서 엄중한 처벌을 받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족)의 입장이 존중받으며, 그들의 아픔을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범죄가 초래한 고통이 완치될 수는 없을지라도 승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전면적인 회복적 정의의 과정이 전혀 충족되지 못할 때, 피해자는 모든 불행의 원흉인 가해자의 사형을 바랄 수는 있습니다.

다만 형벌의 종류와 한계는 피해자(가족)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명화의 정도 및 우리 국가의 인권수준에 따라 정해진다고 봅니다. 한때는 참수형이 없는 나라가 없었겠지만, 지금은 탈레반 지배지역, 소위 이슬람국가(IS) 등에서나 자행되는 극히 혐오할 형벌로 간주됩니다. 북한에서는 총살형의 방법을 기본으로 쓰고 있지만, 우리는 총살은 물론 사형 자체를 형벌로 더 이상 형벌로 쓰지 않음을 내세울 수 있는 문명-인권국가입니다.

#### 5. 사형은 테러범죄에 대한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요즘 세계 각처에 흉악한 테러범죄, 대규모의 폭탄테러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혹 사형을 폐지하면 테러범죄에 대처할 수단을 포기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목적이 뚜렷한 테러범에게 사형이란 순교자 심리를 유발할 뿐으로, 사형이 후속 테러의 억제요인이 될 리가 없습니다. 최근에 대규모 테러를 겪은 노르웨이에서는 테러범에 대해 21년의 유기징역형(최상한)의 형벌을 과했고, 이번에 프랑스 테러의 경우에도 이미 폐지된 사형을 부활하자는 쪽으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사형은 테러범을 응징하는 게 아니라, 테러집단의 사기를 올려줍니다. 극단적인 종교적, 정치적 광신의 분위기에서 “순교자”가 된다는 것은 명예스러운 일이고, 순교자 명부는 이후의 테러범의 사기를 북돋우는 기능을 합니다.

적군파 테러로 악명높았던 1970년대 서독에서는, 그들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테러범의 심리적 도전에 대해 국가의 처형은 또다른 테러적 방법이고, 테러범의 술책에 말려드는 것이란 정책의지로 사형에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또한 테러범의 전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치, 테러범이 가진 정보가치의 유용성 등 여러 측면이 있습니다. 테러범에 대한 종신형, 무기형으로 우리의 안정된 사법-교정체계는 보안과 교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 6. 국가안보를 위해 사형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경험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처벌될 범죄는 형법상의 내란, 외환죄, 그리고 국가보안법

상의 범죄일 것입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6.25전쟁 중의 비상사태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 위반, 5.16쿠데타 직후의 반국가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령들은 위헌 또는 악법으로 지탄받은 것이 적지 않으며, 국회의 입법 혹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등으로 폐기되었습니다.

그 법령 위반으로 사형에 처해졌던 인사들 중 많은 피고인들이 재심을 거쳐 사형판결이 잘못된 것으로 현재 확정된 상태입니다. 이승만 정권 때의 조봉암, 5.16직후의 조용수 등, 소위 인혁당재건위로 연루된 인사들, 이들은 현재 사형범죄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반국가사범 중에서 오히려 고문과 조작, 억울한 오판의 희생자들이 더 많습니다. 반국가사범에 대하여는 오히려 사형제도의 남용이 더욱 문제되는 지경으로, 사형폐지론의 정당성에 무게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형을 폐지한다고 국가안보가 당장 위태로와질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국가안보는 사형제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국방력과 군사력,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나라를 지켜내려는 전국민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1990년 이후의 사형판결을 받은 사안을 보면, 남용되었던 어쨌든,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사형판결을 받은 인사가 전혀 없습니다. 지난 30여년간 사형판결 없이도, 국가안보의 유지에 전혀 지장이 없음을 이 경험적 통계는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 7. 사형폐지는 우리의 주변 국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한국의 사형 폐지는 주변 국가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모델을 따라 대만에서도 사형집행을 줄여오다가 2000년대 중반에 사형집행을 몇 년간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 베트남, 태국 등에서도 한국의 경험이 긍정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한국의 사형 추이를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공개처형이란 잔혹한 방법을 일상화하고 비법률적 처형까지 서슴지 않는 북한 체제를 인권적으로 압박·견인하는 촉매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에 대한 체제우위를 확인하는 가장 인상적인 방법 중의 하나가 사형제 폐지입니다. 과거와 현재의 여러 인권쟁점이 얽혀 있는 동아시아에서 인권국가로서의 한국의 위상을 일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한국에서 사형의 장기미집행과 그 파급효과]

### (1) 국회

사형폐지입법이 15대, 16대, 17대, 18대, 19대에서 계속 발의되었다. 가장 최근인 2015년엔 국회의원 172인의 발의로, 의원의 3/5에 가까운 의원들이 사형폐지법안에 찬성했다.

### 역대 국회 사형제도 폐지 발의 현황

회기	발의일	의결일	발의의원	찬성 인원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
15대	1999. 12. 7.	2000. 5. 29.	유재건 의원	91인	생명의 존엄성, 오판·남용가능성, 위하력 미흡, 세계적 폐지 추세 사형을 단순히 무기징역형으로 대체
16대	2001. 10. 30.	2004. 5. 29.	정대철 의원 등 63인	155인	생명의 절대적 가치,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근본, 국가의 생명보호 의무, 위하력 미흡, 세계적 폐지 추세 사형을 15년 경과 전 가석방, 사면할 수 없는 무기징역형으로 대체
17대	2004. 12. 9.	2008. 5. 29.	유인태 의원 등 175인	175인	이유 위와 동일 + 교화와 사회복귀라는 오늘날 형벌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사형을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대체
18대	2008. 9. 12.	2012. 5. 29.	박선영 의원 등 39인	39인	이유 위와 동일 + 위하에 의한 범죄예방의 필요성이 없거나 국민 법감정이 인정하면 사형폐지가 가능하다는 현재 판결 단서부분 인용 사형을 가석방, 사면, 감형 없는 종신형으로 대체
	2009. 10. 8.	2012. 5. 29.	김부겸 의원 등 53인	53인	이유 위와 동일 + 사형은 사회적 책임을 개인에게만 책임지우는 비겁하고 무책임한 행위 사형을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대체
	2010. 11. 22.	2012. 5. 29.	주성영 의원 등 10인	10인	이유 위와 동일 + 13년 동안 사형집행하지 않은 현 상황 강조 사형을 가석방, 사면, 감형 없는 종신형으로 대체
19대	2015. 7. 6.	2016. 5. 29.	유인태 의원 등 172인	172인	이유 위와 동일 + 위하력 없고 오판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미국 사례 언급, 실질적 사형폐지국 강조 사형을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대체

출처 :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

## (2)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사형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 두차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1996년에는 7인이 합헌, 2인이 위헌의견을 냈다. 그런데 2010년에는 5인이 합헌, 1인이 일부위헌, 3인이 위헌의견을 냈다. 크게 봐서 5(합헌), 4(위헌)인 셈인데, 그 14년의 사이에 사형의 사실상 집행중단이 있었는데, 사형집행중단의 지속은 사형의 위헌론에 더 저울추를 옮겨가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재판관 후보들은 점차 사형폐지론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3) 법원

최근 20년간의 추세는, 법원의 사형선고가 점차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1심 판결을 기준으로 보면, 1990년대 초반에는 연간 30건 내외의 사형판결이 내려졌는데, 2000년대 초반에 이르면 10명 이내로 줄어들고, 2010년 이후엔 연간 1-2건의 사형선고에 그치고 있다. 그 사이에 흉악범죄가 현격하게 줄어들었다는 확증은 없다. 그렇다면 1990년대에 사형선고했던 대부분의 사안들에 대하여, 2010년대에 이르면 사형이 선고되지 않을 가능성이 압도적이라는 것이다. 장기적인 사형미집행은 법원의 양형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법원은, 이제 사형선고를 거의 생각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형은 예외 중에서도 극히 예외적인 사안에 대하여 선고될 수 있을 뿐이다.

2009년 대법원 판결에서, 대법원은 사형에 관하여는, 양형조건에 대한 평범한 참작에 그쳐서는 안된다고 하고, “정신의학이나 심리학 등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의견을 들어보는 등 깊이있는 심리를 하여 본 다음에 그 결과를 종합하여 양형에 나아가야 한다”<sup>1)</sup>고 제한하고 있다.

가장 최근의 사형관련 대법원 판결은 2016년 2월 19일 선고되었다. 일명 윤일병 사건인데, 거시서 사형은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고 한다. 사형의 선고 양형에 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한다.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누구라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형의 선고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51조가 규정한 사항을 중심으로 범인의 연령,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정도,

1) 대법원 2009.02.26. 선고 2008도9867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성폭력범죄의처벌 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살인)}·사채은닉·살인(인정된죄명:상해치사)}

성장과정, 가족관계, 전과의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사전계획의 유무, 준비의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감정,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회복의 정도, 재범의 우려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철저히 심리하여야 하고, 그러한 심리를 거쳐 사형의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사정이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sup>2)</sup>

그런데 윤일병 사건과 같이, 범행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범행수단이 포악함이 공인되는 경우에조차 4인 대법관의 반대의견이 뚜렷히 표명되고 있음은 또다른 변화라 할 만하다.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이기택의 반대의견] 위 사안에서, 범행 수단과 방법의 잔인함과 포악함이 피고인 본성의 발현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고, 생명을 박탈하여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임을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피고인에 대한 사형 선고를 긍정하는 요건의 존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으며, 범행 결과가 매우 중하다 하여 사회적 파장과 형벌의 일반에 방적 목적 등을 내세워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할 수 없고, 범행의 책임을 오로지 피고인에게 돌려 사형 선고를 통하여 피고인의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것이 합당한지 의문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이 반대의견에는, 범행의 동기에 조금이라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사형은 안된다는 점, 사형이 유일한 선택임을 누구라도 납득할만한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점, 범행 결과의 중대성 만으로 사형선고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 오직 피고인에게만 책임을 돌릴 사정이 있어야 사형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내세워 사형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판시한다. 사실 이러한 요건을 남김없이 충족할만한 범행은 거의 있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형 선고에 대해 제약하고 있는 셈이다.

[대법관 김창석의 반대의견] 위 사안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5명의 군인이 사망하고 7명의 군인이 부상을 당하는 등 결과가 너무도 중대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이라는 극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예외적이고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즉 피고인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감수하면서까지도 막아야 하는 일반 국민의 생명 보호나 이에 준하는 매우 중대한 공익에 대한 현재의 급박하고도 실질적인 위협이 있는지, 중대한 결과의 발생을 피고인만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심리하지 아니한 채 사형을 선고한 제1심을 유지한 원심판결에는, 사형의 양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김창석 대법관의 반대의견은, 결과가 아주 중대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생명보

2) 대법원 2016.02.19. 선고 2015도12980 전원합의체 판결[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살인·살인미수·군용물절도·군용물손괴·군무이탈]

호”를 위해 “현재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협”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한다. 피고인을 체포하여 처벌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피고인이 일반 국민에게 급박, 실질적 위협을 줄 수 없기에 사형 선고를 사실상 하지 말라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같이 5명 사망, 7명의 중상을 초래한 군인범죄에 대해서도, 4인의 반대의견이 나올 정도로, 대법원의 사형선고는 그만큼 억제적으로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 <첨부자료>

1. 성명서: 우리는 사형집행의 재개를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전국의 형사법교수 132명 일동— (2009.3.)
2. 세계의 사형현황, 미국의 사형현황
3. 동아시아 국가들의 사형 현황
4. 사형제도에 대한 오해의 시정을 위하여

## <첨부자료 1>

성명서: 우리는 사형집행의 재개를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전국의 형사법교수 132명 일동- (2009. 3.)

이 성명서는, 2009년 3월 사형집행의 재개 움직임에 대하여 전국의 형사법교수의 의견을 모아 법무부에 전달한 글입니다. 전국 형사법 교수의 약 3/4이 이 성명서에 서명했습니다.

최근 몇몇 연쇄살인사건을 계기로 사형집행을 재개하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인들의 잇따른 사형재개 발언과 법무부에서 사형의 재집행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보도를 대하면서, 작금의 사태전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사형의 문제는 우리사회의 인권과 정의실현 정도의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59명의 사형수를 두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지난 11년간 사형을 미집행함으로써, 한국은 이미 '사실상의 사형폐지'(abolitionist in practice)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소중한 성과를 한순간에 뒤집을 수 있는 사형집행움직임은 전세계적인 사형폐지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고, 인권후진국으로의 전략을 의미합니다.

이에 전국의 형사법학자들은, 지속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를 바탕으로, 사형의 재집행은 결코 허용될 수 없다는 확신에서 이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우리의 조국에서는 어떠한 사형도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1. 사형은 야만적이고 비정상적인 형벌로, 헌법상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형벌입니다.
2. 사형폐지는 오늘날 범세계적 추세입니다. 해마다 2~3개의 국가에서 사형제를 폐지하고 있으며, 사형을 폐지하거나 10년 이상 처형하지 않는 국가도 전세계 197개국 중 138개국이나 됩니다. 이에 반해 최근(2007년) 한 해 동안 사형을 집행한 국가는 24개국에 불과합니다.
3. 사형이 살인범을 억제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주장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사형제도의 존치 여부가 살인율의 변화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못함은 세계적으로 증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형의 위협이 두려워 살인을 억제하려는 연쇄살인범은 없습니다.
4. 생명의 존엄성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사형이라는 제도적 살인의 주체가 되어선 안 됩니다.
5. 모든 판결에는 오판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살인범죄의 경우에도 오판의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살인죄에 대한 유죄확정자 중에서도 사법부의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례도 이미 수십 건 이상이 쌓여 있습니다. 불완전한 인간의 재판으로 돌이킬 수 없는 생명박탈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6. 세계의 역사는 사형의 정치적 남용의 사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종교적 동기에 의한 사형, 정치권력의 유지를 위한 사형, 정치적 효과를 겨냥한 처형,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의 산물인 사형이 이어졌습니다. 민주화된 국가라 할지라도 사형집행의 대상 중에는 소수자, 약자의 집단 중에 선택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7. 사형수는 “인간이기를 포기한 죄”를 저질렀다고 하나, 아무리 흉악범이라고 해도 개선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들도 인간입니다. 사형은 인간의 개선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8. 장기자유형은 실제로 사형에 대한 대체효과를 가져오지 못한 모든 나라의 역사입니다. 오늘날 국가는 사형을 이용하지 않고서도 교도소에서의 장기간 격리를 통해 흉악범의 재범위험성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9. 피해자의 법감정에 비추어 사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한 정신적, 물질적 지원과 그들에 대한 공동체의 따뜻한 위로와 관심이 더욱 중요합니다. 사형제가 인간의 응보욕구를 일부 채워주는 점은 없지 않겠지만, 사형을 통해 피해자가 얻을 수 있는 실제 이익은 없습니다.

10. 사형은 직무상 사형집행에 관여할 수밖에 없는 교도관들의 인권을 침해합니다.

11. 사형의 실행 여부는 북한과 대한민국을 가르는 의심할 나위 없는 인권지표입니다. 북한의 공개처형과 같은 인권문제를 확실히 비판할 수 있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은 적어도 사형미집행을 통해 선도적 우위성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12. 사형폐지를 시기상조로 보는 여론이 더 우세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사형의 대안으로서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면 또 여론조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회 및 행정부는 단순 여론조사를 통해 나타나는 의견에 추종하거나 편승해서는 안 됩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도 16대, 17대, 18대 국회에서 <사형폐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계속 발의되었습니다. 행정부에서는 1997년 말 이래 사형집행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11년 이상 지속되어온 흐름을 토대로, 이제 사형의 폐지를 위한 실질적 논의를 해가야 할 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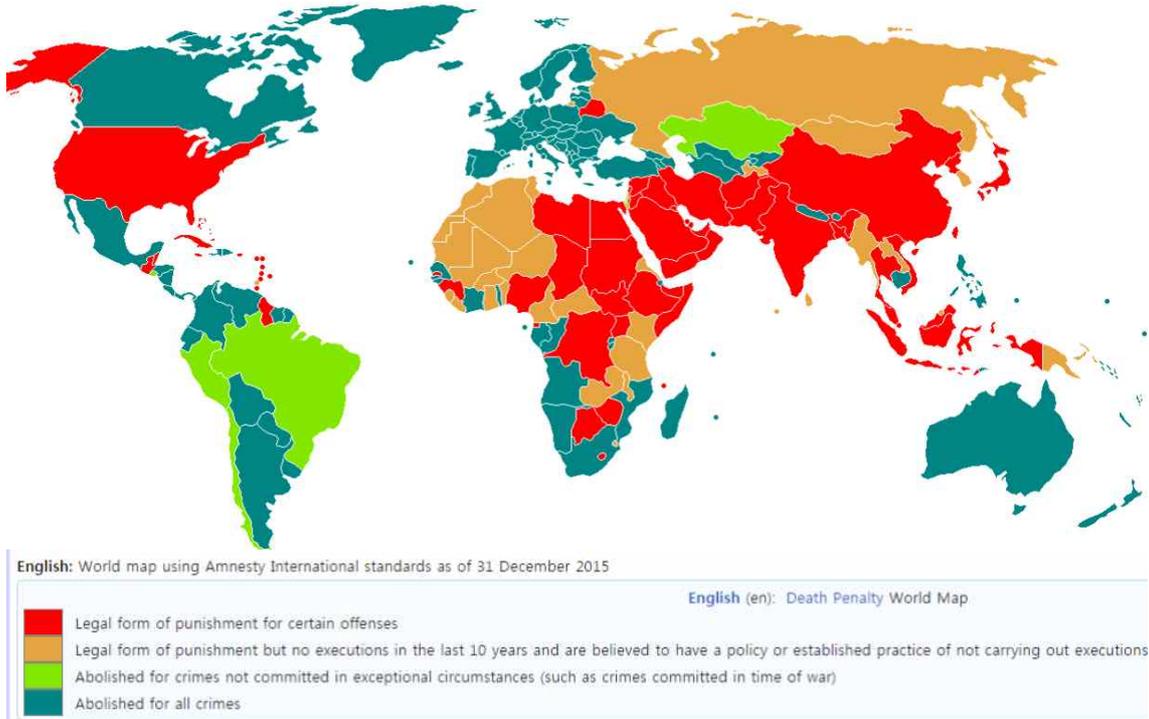
13. 사형집행의 재개를 말할 때, 그것이 일시적 사건이나 감정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우리는 사형과 그 대체형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형을 폐지하지 않더라도, 사형에 대한 제도적 유예조치(moratorium)를 최소전제로 하고, 그 바탕 위에서 우리 국가와 사회가 진일보한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준비를 해가야 할 것입니다.

14. 한 인간의 생명은 전지구보다 무겁습니다. 살인범이 인간의 생명을 경시했다고, 그에 대처하는 국가가 생명을 경시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국가는 제도의 운용을 통해 인간의 생명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 <첨부자료 2: 세계의 사형현황><sup>3)</sup>

### 세계의 사형 지도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5/5d/Capital\\_punishment\\_world.png?uselang=ko](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5/5d/Capital_punishment_world.png?uselang=ko)



#### 2015년 12월 현재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폐지국 : 102개국

=일반 범죄에 대한 사형폐지국(전시는 예외, 그러나 집행실적 없음): 6개국

=사실상 사형폐지국 (지난 10년이상 사형집행 없음): 32개국

=사형 실시국: 58개국

#### 최근의 사형폐지국들

Gabon (2010), Latvia (2012), Benin (2012), Mongolia (2012), Madagascar (2012), Chad (2014), Fiji (2015), and Suriname (2015)

#### 서방국가 및 경제선진국 중

=사형존치국: 미국, 일본, 싱가포르, 타이완,

=유럽 국가 모두가 사형을 폐지, 단 Belarus만 사형 존치.

3)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Death\\_Penalty\\_World\\_Map.svg](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Death_Penalty_World_Map.svg)

## 10 countries with the most executions, 2013

### Executions around the world

Country ▼	Reported Executions 2013	2007-2013
China	Thousands	Thousands
Iran	369	2,032
Iraq	169	425
Japan	8	41
North Korea	70	70
Saudi Arabia	79	502
Somalia	34	57
Sudan	21	51
USA	39	259
Yemen	13	165

Created with [Datawrapper](#)

Source: Amnesty International, [Get the data](#)

## 미국의 사형 현황<sup>4)</sup>

= 1967-75년까지는 사형집행 없음. 1976년 재개. 2000년까지 점증하다  
20001-현재까지는 점점 집행이 줄어들고 있음. 실제로는 몇 개 주에서만 집행  
되고 있음. 사형폐지 주가 점점 늘어나고 있음.

= 19개 주, DC는 사형을 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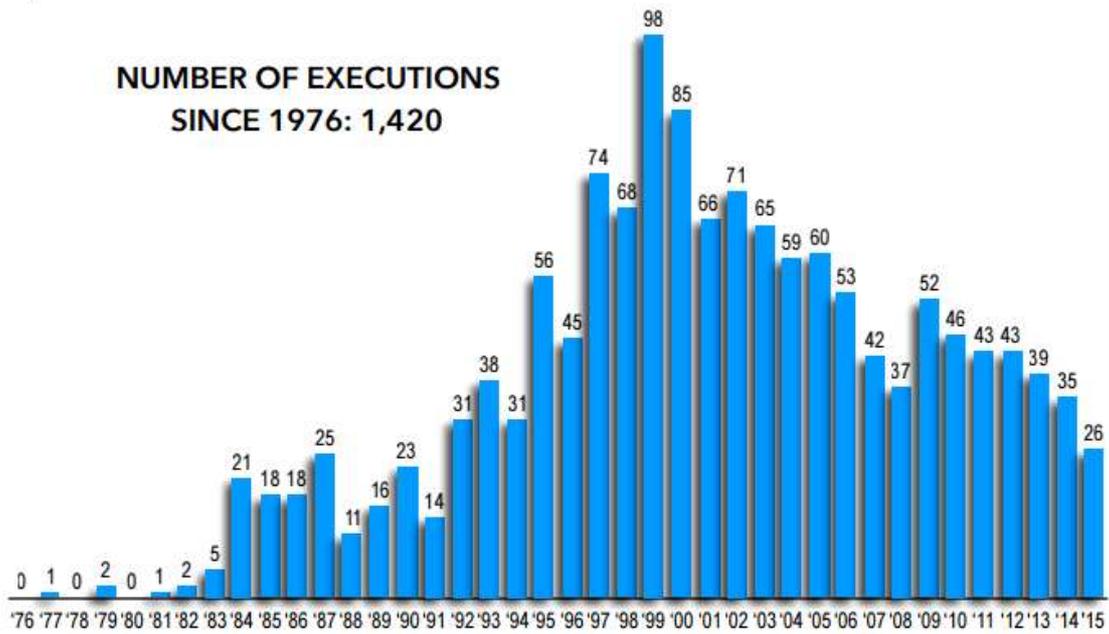
= 30개 주는 지난 5년간 사형집행을 한 적이 없음.

= 1976년 사형집행 재개후에, 실제 사형집행 건수 중 2개주가 50% 이상을 차  
지.

= 156명의 사형확정자가 무죄로 풀려남 (1973-99년엔 연평균 3명, 2000-13년  
엔 연평균 5명)<sup>5)</sup>



Updated: November 18, 2015



4) <http://www.ncadp.org/m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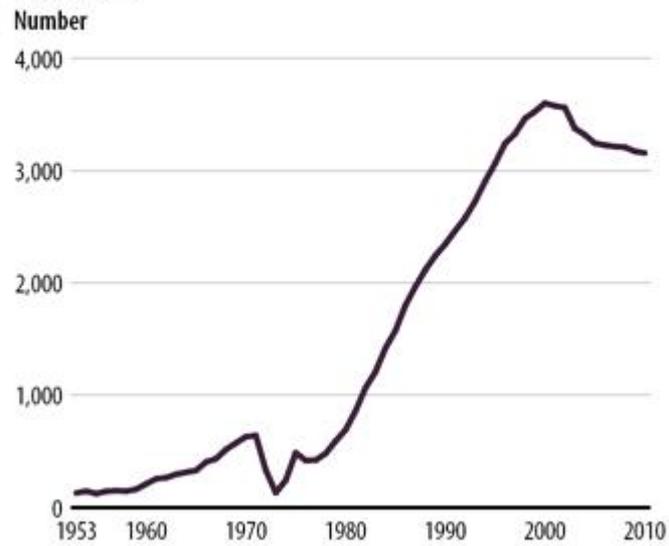
5) 19 States and the District of Columbia do not have the death penalty.

30 states have not carried out an execution in the last 5 years.

2% of all counties in the U.S. are responsible for over 50% of all executions since 1976.

156 innocent people have been freed from death row.

**FIGURE 2**  
**Number of persons under sentence of death, 1953–2010**



Source: BJS, National Prisoner Statistics Program.

28

## No executions in last 5 ye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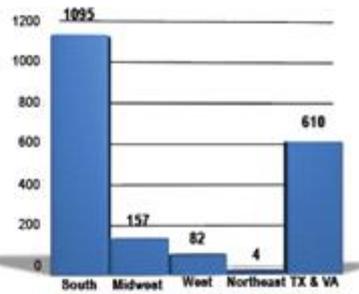
30

### 3 States record 1/2 of total executions Texas, Virginia, Oklahoma

**NUMBER OF EXECUTIONS BY STATE SINCE 1976**

	Total	2013	2012		Total	2013	2012
Texas	500	8	15	Nevada	12	0	0
Virginia	110	1	0	Utah	7	0	0
Oklahoma	105	3	6	Tennessee	6	0	0
Florida	77	3	3	Maryland	5	0	0
Missouri	68	0	0	Washington	5	0	0
Alabama	55	0	0	Nebraska	3	0	0
Georgia	53	1	0	Pennsylvania	3	0	0
Ohio	51	2	3	Kentucky	3	0	0
North Carolina	43	0	0	Montana	3	0	0
South Carolina	43	0	0	U.S. Gov't	3	0	0
Arizona	34	0	6	Iaho	3	0	1
Louisiana	28	0	0	South Dakota	3	0	2
Arkansas	27	0	0	Oregon	2	0	0
Mississippi	21	0	6	New Mexico	1	0	0
Indiana	20	0	0	Colorado	1	0	0
Delaware	16	0	1	Wyoming	1	0	0
California	13	0	0	Connecticut	1	0	0
Illinois	12	0	0				

**EXECUTIONS BY REG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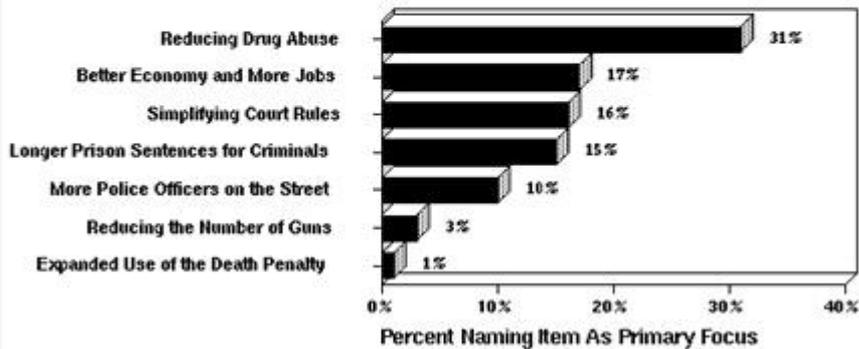
\*Federal executions are listed in the region in which the crime was committed.

21

### Police Opinion: What i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for reducing Violent Crim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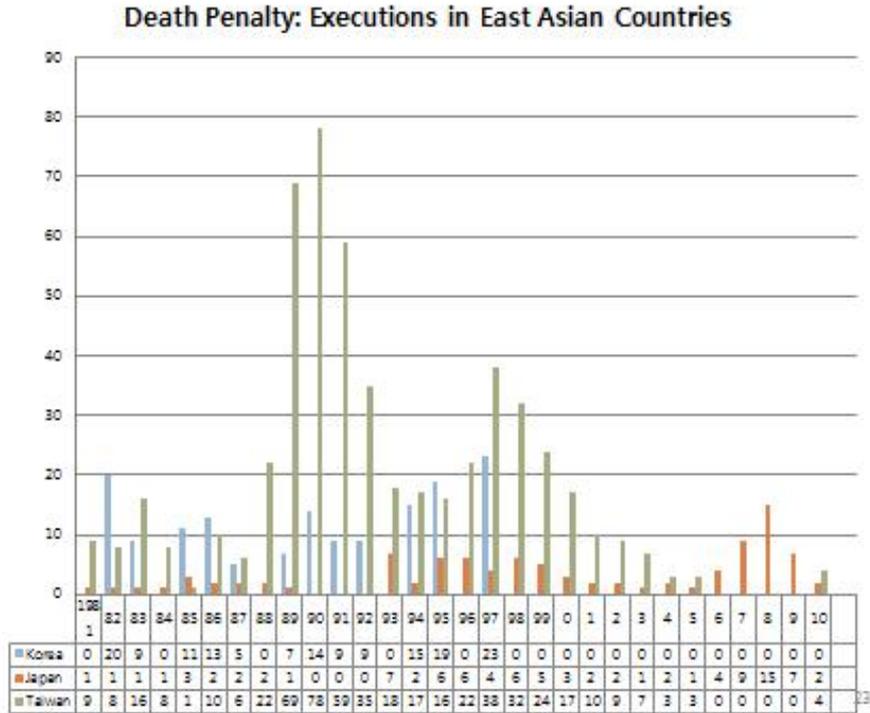
[On the Front Line: Law Enforcement Views on the Death Penalty](#) A 2005 national survey of police chiefs from around the country discredits the repeated assertion that the death penalty is an important law enforcement tool.

#### Primary Focus for Police Chiefs in Reducing Violent Crime



43

### <첨부자료 3> 동아시아 국가들의 사형집행 현황



### Death Penalty: Number of Executions in East Asia

Year	Korea	Japan	Taiwan
1981	0	1	9
82	20	1	8
83	9	1	16
84	0	1	8
85	11	3	1
86	13	2	10
87	5	2	6
88	0	2	22
89	7	1	69
90	14	0	78
91	9	0	59
92	9	0	35
93	0	7	18
94	15	2	17
95	19	6	16
96	0	6	22
97	23	4	38
98	0	6	32
99	0	5	24
2000	0	3	17
01	0	2	10
02	0	2	9
03	0	1	7
04	0	2	5
05	0	1	5
06	0	4	0
07	0	9	0
08	0	15	0
09	0	7	0
2010	0	2	4
11	0	0	5
12	0	7	6
13	0	5	6

- Factors:
- -seriousness of crime?
- -economic status?  
GDP
- -public opinion?
- -political leadership?

## <첨부자료 4: 사형제도에 대한 오해의 시정을 위하여>

사형제도 및 실제에 대한 오해의 시정을 위하여

한인섭

다음은 언론에서, 국회에서, 각종 논쟁에서 사형제도 및 집행에 관한 여러 논의 중에서 오해의 시정을 위해 개인적 의견을 적은 것입니다. 오해의 시정에 다소라도 참고가 된다면 다행이겠습니다.

### ■ “국민여론은 사형을 지지한다. 여론을 존중해야 한다?”

-“사형 집행이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이 높다”는 뜻을 정부에 전달했다”

-“국민 대부분은 이 연쇄살인범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고 처벌되기를 희망할 것”

-“인권을 위해 사형집행 않는 것은 포퓰리즘”

-아닌게 아니라 여론의 사형지지율이 높다면, 그 여론을 늘 신경쓰야 하는 정치인들이 발빠르게 여론을 전달하고 여론을 대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여길 수도 있다. 우리의 여론조사에서 사형의 지지도는 2/3 내외이고, 낮을 경우에도 절반은 넘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 그런데 형벌을 “여론대로” 하려들다가는 극형이 지배하는 분위기로 순식간에 전환된다. 국가의 법절차는 여론의 열기를 가라앉히고, 모든 증거를 법정에 현출시키며, 피고인의 변호인의 변론을 거쳐, 상소심까지 치르가며 결론에 이르러간다. 여론재판이 아니라 법률에 따른 재판이 되도록 하는 것이, 성숙한 법치주의의 모습이다.

-현재의 사형폐지국도 폐지 당시 여론의 지지가 폐지 쪽으로 기울어져서 폐지된 것이 아니다. 사형폐지론을 선도한 유럽 각국의 경우 오히려 여론의 흐름을 거슬러가며, “합리적”이고 ”인도적“인 방향으로 형사정책을 이끌어간 것이고, 그 점에서 입법자는 여론의 기계적 반영자가 아니라 ”계몽주의자“의 역할을 했다. 폐지 이후 흉악범이 등장할 때마다 사형의 재개 논의가 일었으나 그러한 유혹을 극복하였다. 폐지상태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국민여론도 폐지론의 타당성을 수용하게 되었다. 사형이 없어도 사회의 치안이나 안전 확보에 크게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말이다.

-사형여론이 들끓는 상황에서 신속한 재판과 신속한 처형이 행해지는 것은 극히 위험하다. 심지어 3심제도 부인하고 단심으로, 증거의 설시도 생략하고 처형이 행해진 적도

있다. 1950년 6·25전쟁 때 서울수복 직후 행해진 “부역자재판”이 그것이다.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단시일에 이루어진, 판결에 의한 대량적 학살의 이 사례는 “빨갱이에게 무슨 법이고 절차냐”라는 “과혹한 여론”의 부르짖음에 의해 압도된 상황에서 이루어졌고, 몇천명의 사람들이 증거제시도 없이, 단심으로, 단시일 내에 재판받고 처형되었다.

-최근의 예로는 지존파 사건이 있다. 이들에 대한 여론의 분노가 극점에 이른 상태에서, 법원은 전례없이 집중심리와 판결을 내려졌고, 그리하여 체포로부터 대법원판결까지 만1년도 끌지 않았다. 아마도 죽어 마땅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지존파 6인에 대해, 그 죄의 경중도 충분히 심리하지 않고, 참작사유에 대한 검토도 제대로 없이, 매우 짧은 시기 내에 재판이 끝났고, 곧이어 처형까지 집행되었다. 다른 사건이라면 이들 중 1~2인의 사형확정은 있었어도, 전원에 대하여 사형확정이 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었던 면이 있다.

-흉악범들을 “처형하라” 심지어 “공개처형”하라는 식의 여론을 정부가 그대로 따른다면 그것이 “포퓰리즘”이다. 그런데, “인권을 위해 사형집행 않는 것은 포퓰리즘”이라는 주장은 또 무엇인가. 사형의 미집행과 사형폐지론은, 인간의 원초적 감정을 극복하고 이루어지는 국가적 제재이다. 국가적 제재에도 분노와 눈물이 있겠지만 그 분노와 눈물은 “감정의 직접적 표출”이 아니라 “이성의 통제를 받고, 과학적 검증의 뒷받침”을 받는 것이어야 한다. 흉악범의 즉각적 처형을 외치는 정치인은 국민여론으로부터 쉽사리 지지를 얻을 수 있다. 정치적 센세이션을 추구하는 정치인이나, 사회악을 응징하는 람보/터미네이터로 이미지를 얻고 싶은 정치인들은 사형집행을 소리높여 외친다. 마치 9·11 테러에 대해 곧바로 이라크를 침공하고 “악의 축”을 응징하는 것이 일단 즉각적 여론의 지지를 얻고, 그것의 문제점을 지적하기가 매우 주저되듯이 말이다. 정치인이 사형집행을 외칠 때, 대개 단기적 여론의 동원을 겨냥하는 정치산술의 산물이고, 정치적 포퓰리즘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 “과거엔 오판가능성 있었으나, 지금은 거의 없다. 유영철, 정남규 등에 대해 오판가능성 없지 않는가?”

-사형폐지론의 가장 강력한 논거가 오판가능성의 지적이다. 사형은 국가제도를 통해 저질러지는 합법적 ‘살인’행위다. 그런데 살인죄를 저질러지 않았는데, 혹은 사형에 처해질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범죄사실이 있다고 확정하고, 처형까지 해버리는 경우 국가가 바로 살인자가 된다. 문제는, 그렇다고 그러한 살인행위의 관여자[경찰-검사-1심판사(3인)-항소심(3인)-대법원(4인 혹은 전원)]가 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형사사법 관여자들은 아무 처벌도 받지 않고, 범죄자는 알고 보니 “사법살인”

의 피해자였다는 사실 앞에, 어떤 국가권력도 그건 제도운영상 어쩔 수 없는 일이야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이다. “인간의 생명은 지구보다도 무겁다”고 단언한 법원이 그 인간의 생명을 유린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그러기에, 인간의 오류가능성, 제도의 오류가능성에 대한 겸허한 인식은 사형제도와 양립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사법살인”(judicial murder, killing by judges)으로 논란되는 여러 사안들이 있었다. 그 중에는 법원의 재심판결로 나중에 무죄임이 명백히 선언된 사건들도 있다. 최창식 공병감은 1950년 6월 27일 밤 한강인도교 폭파사건의 책임을 지고 처형당했지만, 그로부터 14년 뒤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았다. 1961년 5.16군사쿠데타를 자행한 정치군부는 민족일보 사장이던 조용수 씨를 군법회의에 회부시켜 사형선고를 내리고 처형했다. 그는 최근에야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았다. 가장 극악한 사례는 1974년 소위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었다. 긴급조치 하에서 군사재판을 통해, 그리고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내려진 지 만 하루도 안되어 7명이 처형당했다. 그들도 최근에 이르러서 재심-무죄판결을 받아냈다. 재판 당시에 “사법살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주장을 하는 변호인까지 법정구속시켰던 체제하에서, 피고인의 누명을 벗길 방법은 없었던 것이다. 그런 사법살인의 공범들은 아직도 아무도 뉘우치지도 않은 채, 다만 사후의 무죄판결로 유족들에게 한가닥 위로로 삼을 뿐이다. 적어도 인혁당 판결의 법적 교훈은, 더 이상 사형제도의 존재근거가 없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며, 그 판결의 후속작업으로 국회는 사형의 폐지의 결단을 내렸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사법부의 독립이 지켜지고 있으며, 수사기관도 강압수사를 하지 않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 있다. 그러나 독재와 민주국가가 일도양단으로 구분될 수 있는가. 독재체제 하에서도 독재권력은 언제나 자신을 “민주주의” 한다고 했지 독재한다고 주장한 적이 없다. 사형의 확정판결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살인사건의 유죄를 받은 사건 중에 나중에 무죄로 밝혀진 사례도 적지 않다. 무고하다고 주장하는 것 말고, 법원이 무죄로 선언한 경우만 국한해 봐도 말이다.

1980년대 초반 김시훈 사건은, 고문과 강압으로 한 시민(폭력전과도 다수 있었다)을 살인범으로 하급심에서 단죄하였다가, 대법원 재판 계류 중에 진범이 잡혀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이다. 1990년대 초반에는 김기웅 순경 피고사건이 있었다. 현직 순경이 경찰에 연행되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1심과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도 진범이 우연히 체포되어 여죄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자백하여 대법원에서 무죄로 된 경우이다. 만일 진범이 잡히지 않았더라면, 그가 여죄를 자백하지 않았더라면, 한 나라의 법원은 그를 살인범으로 단죄하고, 진범을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하도록 놓아둘 뻔했다.

국과수가 관여한 사건, 소위 과학수사의 성과를 보여준다고 자랑했던 사건 중에도 무죄사건들이 있다. 소위 “치과의사 모녀살해 피고사건”이라 불리는 사건에서, 1심은 유죄, 항소심은 무죄, 대법원은 유죄취지의 판기환송판결, 파기환송심은 무죄, 대법원은 무죄로 된 사건도 있다. 유죄판결이 2번, 무죄판결이 3번 내려진 셈이다. 이 중 일부는

실체적 진실에는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어떻게 오늘날의 사법제도는 오판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인가.

최근의 국민참여재판에 유/무죄의 판정의 실상이 더욱 적극적으로 공개되고 있다. 살인 혐의에 대해서도 배심원들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고, 배심원 다수의 평결과 재판부의 판결이 일치하지 않고, 1심 판결과 항소심 판결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뚜렷히 보여지고 있다. 오판가능성은 그야말로 극히 드문 경우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 오판가능성은 현재의 사법제도 하에서 상존하고 있는 것이다.

오판가능성이 생길 가능성은 수사와 재판의 과정을 보면 너무나 뚜렷하다. 유죄의 판결은 ㉠<증거>에 의거하여, 그 증거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법관의 ㉡<자유심증>으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정도의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판정할 때 유죄판결이 내려진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사형판결에 이르는 각 요소를 검토하면, 오판가능성이 내재해 있을 수 밖에 없음이 쉽게 확인된다.

㉠<증거>: 살인사건에서 증거로 널리 쓰이는 것은 피의자의 자백, 목격자의 증언, 과학적 감정 등이다. 자백은 여전히 실제로 증거의 여왕으로 자리잡고 있다. 자백 자체의 가치에다, 자백을 토대로 다른 증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백을 짜내기 위해 고문이나 강압적 수사가 행해진다. 어떻게 저지르지도 않는 살인에 대해 자백을 할 수 있는가 하겠지만, 폐쇄적 수사환경 속에서 인간은 의외로 취약할 수 있다. 명시적 고문이 있을 때는 물론 고문 탓으로 돌릴 수 있지만, 고문을 하지 않고서도 허위의 자백을 할 수 있다. (김기웅 순경사건처럼) 현직 경찰인데도 (고문 없이도) 자백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경찰과 검찰은 언제나 고문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지금도 고문으로 죽는 경우도 있고, 고문 시비가 일어나고 있다. 법원은 수사기관에서의 고문 주장에 대해 대체로 피의자의 주장을 배척해왔다. 그런 법원의 소극적 태도는 수사기관에서의 강압 수사의 조장에 기여해왔다. 수사기관이 보기에 고문의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 해도, 당하는 피의자 입장에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문같은 환경으로 느낄 수 있다. 오죽하면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는 사장급 인사들도 재출두가 두려워 자살을 하겠는가 말이다.

목격자의 증언은 매우 불확실할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 거듭 진술하다보면, 사후적으로 더 정교한 증언으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실험해보면, 정밀한 증언도 있지만, 인간의 인지력과 기억력의 한계, 편견에 대한 왜곡된 인상 등이 결합되어 그 진실성에 많은 결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과학적 증거, 특히 DNA를 내세운 증거들은 CSI의 이미지와 어울려 오류가능성이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의심스러운 대목이 적지 않다. 치과 의사 모녀살해피고사건의 쟁점은 실로 간단한 것이었다. 오전 7시에 의사가 출근하기 위해 집을 나선 것은 분명한 사실로 확인되었다. 그러면 모/녀의 사망시간이 7시 이전인가, 이후인가로 간단히 압축되는데, 그 점에서 과학적 감정의 질이 의심스럽게 판정된 것이다. 더욱이 우리의 경우에는 검시자가 초동수사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지 못하고 있다.

㉠<자유심증>: 증거가 제시되면, 법관은 자신의 살아온 경험(경험칙)과 논리적 개연성(논리칙)을 종합하여 판단을 내리게 된다. 최근의 배심재판에서의 여러 평결, 판결 사례를 보면, 사람마다 경험과 논리적 판단에서 차이가 나올 수 있음이 다양하게 보여진다. 우리의 형사사건에서, 특히 살인사건에서,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누리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한계가 매우 많다. 변호인들은 피의자, 피고인과 접견하는 기회도 많지 않고, 그들의 사연을 철저히 듣고 판단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런 상황에서 증거에 대한 충분한 탄핵이 이루어졌는가 의문될 때가 적지 않다. 살인사건은 합의부에서 다루는데, 합의부가 실제로 합의부로 기능하는가, 재판기록부터 3부가 복사되어 3명의 판사들이 모두 기록을 검토하지 않는다. 합의부가 합의부가 아닌 것이다. 합의부원 사이에 의견이 다를 때, 하급심의 경우 소수의견은 기록되지도 않는다. 마치 전원일치인 것처럼 외양을 띤 판결문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자유심증주의는 법정증거주의보다는 우월할 지 몰라도, 진실의 보증수표는 될 수 없는 것이다. 인간의 취약한 판단력에 타인의 생명을 거는 모험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특히 흉악범, 유영철·정남규·강호순 등의 경우에 오판가능성은 없지 않으나, 명백히 오판가능성이 없는 사건에만 사형을 집행하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모든 유죄판결은 그대로 집행된다. 오판가능성이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제도적으로는 오판가능성은 없다. 살인죄의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甲, 乙, 丙이 있다고 하자. 甲은 범죄사실을 자백한 자, 乙은 절대무죄임을 주장하는 자, 丙은 전혀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라고 하자. 국가기관에서 甲, 乙, 丙을 달리 취급하는가. 혹시 乙은 오판가능성 때문에 집행을 주저하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 셋 다 살인의 眞犯으로 분류될 뿐이다. 甲은 양형에서 선처받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지만, 乙은 선처받기가 어렵다. 재판과정에서 유죄증거가 분명한데도 끝까지 잡아떼고, 반성하지도 않고, 형사사법기관을 불신하고 반항하기 때문이다. 乙에 대해 내심으로 유죄가 아닐지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유죄판결을 내리는 판사가 있다면, 그 판사는 <합리적 의심의 정도를 넘는 입증>을 해야만 유죄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헌법/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을 지키지 않는 판사이다. 따라서 판사들은 (속으로는 어쨌든 간에) 적어도 겉으로는, 乙은 진범임에 확실하다는 태도를 취할 것이다. 따라서, 자백했든 부인했든, 모든 살인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들은 모두 확실히 진범이며, 오판가능성은 없다고 주장되고 집행된다. <사형수 오휘웅 이야기>의 주인공 오휘웅은 담당변호사(이범열)에 의하면 절대무죄이고, 심층취재를 열심히 한 조갑제 기자에 따르면 책 한권을 쓸만큼의 무죄사유가 분명하지만, 범행을 끝내 부인하는 그 모습을 사형집행을 앞당기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뿐이다. 결국, 누구에 대해, 얼마만큼의 오판이 일어났는지, 확실히 말할 방법이 없다. 불완전한 인간의 판단, 불완전한 제도의 결함을 감안할 때, 절대적 오류불가능성을 전제로 한 사형집행제도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서 사형집행의 추세가 조금 주춤해진 것은 2000년 이후이다. 미국의 사형집행

은 주지사의 재가가 있어야 한다. 사형존치주인 일리노이 주지사(George Ryan)은 주내의 다수의 사형수들이 새로운 증거(DNA 등)에 의해 심사될 때 유죄판결이 유지될 수 없는 일련의 사건들을 접한 다음, 결국 주내의 모든 사형집행에 대한 정지조치(moratorium)를 선언했다.<sup>6)</sup>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실제의 판결은 결함 투성이었고, 사형에 대한 재심이 이루어질 사건이 적지 않음에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한국의 형사재판이 미국의 그것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권리 면에서 훨씬 취약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에 이어 일련의 사형존치주들에게 정지조치가 이어졌다. 현재 최선의 증거도 시간이 지나 새로운 과학의 도전 앞에 무력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런데 현재의 증거를 맹신하고 몇가지 증거를 모아, 절대무오류성의 전제하에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국가의 오만이다.

-“사형제도가 가지고 있는 단 하나의 오판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법제 하에서 오판가능성은 “단 하나”에 그치지 않는다. 오판가능성 여부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를 해본 글도 거의 없고, 실무상 그에 대한 심각한 논의를 한 적도 없다. 이러한 제도와 환경 하에서 오판가능성은 상존해 있을 수밖에 없다.

## ■ “사형판결이 확정된 사형수를 처형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

*“**사형** 판결이 확정된 이상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

*“사형집행은 현행법 체제에서 준법을 하는 것”*

*“사형집행을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 1997년 이후 법무부장관은 모두 직무유기를 한 셈”*

*“법치국가인데 사형선고를 받은 범죄자들의 사형 집행을 안하면 '야수적인 정글의 나라'가 될 것”*

사형은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형사소송법 제463조). 사형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제465조 제1항). 재심의 청구..이 있을 때에는 그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의 기간은 전항의 기간에 삽입하지 아니한다(동조 제2항). 즉 현행 제도상으로 사형집행은 ㉠6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의 명령이 있어야 가능하다. 법무부장관이 6개월 이내에 집행않으면 직무유기를 하는 셈이다. 법조문상으로 이런 주장은 일견 타당한 것 같다. 과연 그런가를 살펴보자.

6) GOV. GEORGE RYAN, Illinois: I now favor a moratorium, because I have grave concerns about our state's shameful record of convicting innocent people and putting them on Death Row. I can't support a system which in its administration has proven to be so fraught with error and has come so close to the ultimate nightmare: the state's taking of innocent life.  
[http://www.pbs.org/newshour/bb/law/jan-june00/deathpenalty\\_2-4.html](http://www.pbs.org/newshour/bb/law/jan-june00/deathpenalty_2-4.html)

-형이 확정되었는데, 6개월을 굳이 기다릴 것은 무엇이나. 범죄에 대한 기억이 사람들에게 남아있을 때 집행하는 것이 더 강력한 인상을 주지 않겠는가, 그러니 조기집행일수록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될 법하다. 우리 역사에서 가장 조기집행된 것으로 알려진 사건은 인혁당 재건위사건이다. 7명의 인사들은 대법원의 확정판결 바로 다음날 새벽에 처형당했다. 가장 조기집행한 그 사건은 최악의 사례로 꼽히고 있다. 김재규와 그 부하들은 대법원 확정판결 난 지 4일만에 처형당했다. 만일 그렇게 빨리 처형당하지 않고 몇 년을 더 살았더라면, 적어도 김재규 부하 중 단순가담자에 대하여 처형이 이루어졌을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곧바로 죽이는 “즉결처형”은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보복형 처형이며, 주로 정치적 목적이나 권력의 다른 의도가 개재되기 때문이다. 조봉암, 조용수의 경우도 6개월 이내에 처형되었다. 사형이 확정된 지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이 집행명령을 했다면, 그것은 충실한 직무수행으로 상찬받을 일이 아니라, 인권경시의 법무부장관으로 지탄받아야 할 것임을 역사가 증명하는 바이다.

-사형판결과 사형집행은 그 단계가 다르다. 판결과 동시에 집행에 이르게 되는 다른 형벌과 그 점에서 사형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Death penalty is different! 사형을 존치하는 나라에서도 사형판결과 집행 사이에는 엄청난 시간적 간격을 둔다. 사형집행을 자주 하는 미국에서도 사형확정자(death row)가 사형집행에 이르기까지는 15년 내외의 시간간격을 둔다. 그 사이에 사형확정자들은 재심을 거듭거듭 청구하기도 하고, 참작사유를 들어 탄원하기도 한다. 혹시나 그들에게 유리한 사실이나 정황이 없는지 거듭거듭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과정을 밟는다. 바깥 사회의 변호사, 법학교수, 언론인, 로스쿨학생들이 이들을 면담하고 새로운 사실관계와 정상을 탐구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거쳐서 집행이 이루어진다. 다른 형벌과는 달리, 사형의 판결은 곧바로 혹은 단기간에 집행하지 않음이 원칙이다.

-사형확정자는 모두 사형집행을 당하는가, 혹은 당해야 하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미국에서 지금 사형확정자는 3천명이 넘는다. 그 중 50명~100명 이내의 인원이 (장기간의 대기기간을 거쳐) 사형이 집행될 뿐이다. 모두 혹은 대부분이 사형집행을 당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사형집행이 되지 않는다.

-사형제도를 존치하셔도 장기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의 사형폐지국으로 평가받는 나라도 생겨난다. 이들 나라는 10년 이상 사실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을 때 사형폐지국으로 등급매겨진다. 이후 이들 나라에서 사형을 법률적으로 폐지하는 단계에 들어선다. 따라서 6개월 이내에 집행하느냐, 장기간 나아가 10년 이상 미집행하느냐 하는 것은 정책적 판단의 문제다. 6개월 이내에 집행하던 야만적 단계로부터, 점점 기간을 늘려가다 10년을 넘기고 더 나아가 폐지의 단계에 이르는 것이 문명화의 과정이다.

-사형집행을 계속 보류하는 것은 위에서 말한 정치적 이유 때문만도 아니다. 정치적 이유 말고도 수많은 다른 사유들이 사형집행과 관련될 수 있다. 첫째, 사회여론의 변화

가 있을 수 있다. 한 때 처형당해야 마땅할 범죄도 시간이 지나면서 법의식이 바뀌고, 그에 따라 처벌가치(penal value)가 바뀔 수 있다. 남편살해범의 경우 과거엔 사형이 당연했겠지만, 남편살해의 이유가 남편의 지속적인 아내폭력에 기인한 점이 점점 밝혀지고 폭력피해자로서의 아내의 곤경이 부각되면서 그 처벌의 수준이 계속 낮아졌다. 지금은 심지어 집행유예나 단기형을 받는다. 왜? 부부간 살인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그러한 유형의 살인에 대한 처벌가치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둘째, 인간의 개선가능성이다. 살인할 당시에 그 살인범은 정말 도저히 인간같지 않는강박하고 잔인한 면모를 보여주었지만, 이후 살아가면서 개선될 수도 있고 심지어 다른 재소자들을 교화시키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살인현장에서 본, 체포현장에서 본 범죄자와, 교도소에서 본 범죄자는 같은 모습이 아닐 수 있다. 교도소에서의 ‘모범수’ 중의 일부는 살인범죄의 전력을 갖고 있다. 그렇게 변모된 자를 처형한다는 것은 뭔가 합당하지 않는 감이 들 수 있다.

-사형판결이 확정되는 대로 족족 집행명령을 내린다면, 판결된 경우 집행이 원칙적인 모습이라면, 그런 나라야말로 가장 야수적인 정글의 나라이다. 대법관도, 국회의원도 사형은 다른 형벌과 다르다는 점을 무시한다. 사형선고와 집행은 다르다. 법무부장관은 6개월 이내에 집행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가책받을 이유가 없다. 사형집행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여러 사안을 살펴 집행정지(moratorium)을 선고할 수도 있는 것이며, 장기간 유예를 통해 사형이란 극형의 제도 자체의 변화를 유도할 수도 있다. 어느 나라도, 사형집행은 선고의 당연한 효과로 여기지 않는다.

## ■ “사형집행에 대해 과거엔 (집권측의) 정치적 고려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으나, 현재는 그렇지 않다?”

-사형집행은 늘 정치적 고려가 따른다. 집행의 ‘시기’의 선택, 집행의 ‘대상자’의 선택에서 정치적 고려가 따른다는 것이다.

<시기>부터 살펴보자. 앞의 한국의 사형집행실태를 보면, 대통령의 취임 첫해(1981년, 1988년, 1993년, 1998년, 2003년, 2008년)에는 사형집행이 없었다. 취임의 해에 죽이는 것은 상서롭지 못한 탓인가? 그 다음해에 처형이 이루어지곤 했다. 최근에 가장 많은 사형집행이 이루어진 게 1997년 연말인데, 그 때의 집행명분은 “후임 대통령에게 부담을 넘겨주지 않으려고”라고 했다.

두 번째, 전체적 경향을 보면 정치적 권위주의가 심할수록 사형집행이 많이 이루어졌다.

<집행대상자>도 여론의 효과가 고려된다. 범죄가 흉악해도 여론의 주목을 덜 받으면 사형보다 무기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필자는 무기형에 대한 심층연구를 하면서 무기수의 범죄사실을 일람한 적이 있는데, 무기수의 범죄는 거의 살인죄이며 참작사유가 없는

범행들이다. 참작사유가 조금이라도 발견되면 양형에서 무기보다 낮은 형이 선고된다. 과거엔 보다 직접적인 정치적 효과를 겨냥하여 처형이 이루어져 왔다. 인혁당사건, 김재규 사건 등이 그 대표적이다. 김대중에 대한 사형확정과 감형 모두 치밀하게 계산된 정치적 산물이었다. 사형을 통해 정권은 무언가를 얻으려 한다.

-살인사건은 언론의 주목을 끌기가 쉽고, 사형도 마찬가지다. 얼마전 청와대 메일사건에서도 보듯이, 연쇄살인사건도 정치적으로 이용된다.<sup>7)</sup> 여론의 관심사의 전환을 위해 살인사건을 이용할 수 있다는 유혹을 받는 것이다. 정치적 전환을 위해서 뿐만 아니다. 정치적 인기를 얻기 위해, 정의의 사도로 포장하기 위해 “악당”이 필요하다. 그 악당과 싸우는 존재로서의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키는 것은, 미국 정치에서 늘상 활용되어온 정치책략의 하나이다.

**■ “사형은 살인범죄를 예방, 억제하는 효율적 수단이다. 사형이 아니고는 흉악범죄를 무엇으로 막을 것인가?”**

-사형이 살인행위를 예방하는 효과가 없다는 것은 20세기 중반에 T. Sellin 등의 연구로부터 시작되었다. 미국사회가 보수화하면서 1명의 사형은 7명의 살인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등의 주장(I. Erlich) 등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에 동조하지 않는다. 전세계적인 연구의 집적은, 사형은 살인범죄의 증감과 관계없다는 것이다. 그 이유를 흉악한 살인범이나 연쇄살인범에 맞춰, 몇가지만 알아보자.

-연쇄살인범이 살인을 계속하는 것은 사형집행이 없거나 적어서가 아니다. 그들의 살인행각이 멈추는 것은 범행이 탄로나고 체포·구속되어서다. 그들의 범행을 억제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사형이 아니라 체포이다. 그들은 체포당할 것을 염려하며, 범행이 탄로나지 않도록 애쓴다. 잡힐 때까지는 잡히지 않으리라 확신하기에, 혹은 잡히지 않는 방향으로, 범행을 계속한다. 그들의 범죄를 억제시키는 기본적 방법은 범죄의 기회(O)를 줄이고, 체포가능성(A)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O를 위해서는 감시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 가로등, CCTV, 이웃간의 감시 등이 그에 기여한다. A를 위해서는 수사기법을 전문화하고, 증거탐지에 전력을 쏟아야 한다. 실종자 신고를 장려하고, 초동수사를 강화해야 한다. O와 A는 살인범의 범행개시와 범행계속에 영향을 직접 미친다.

7) “용산사태를 통해 촛불시위를 확산하려고 하는 반정부단체에 대응하기 위해 '군포연쇄살인사건'의 수사내용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바랍니다. 특히 홈페이지, 블로그 등 온라인을 통한 홍보는 즉각적인 효과를 노릴 수 있으므로 온라인 홍보팀에 적극적인 콘텐츠 생산과 타부처와의 공조를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면 ▲연쇄살인 사건 담당 형사 인터뷰 ▲증거물 사진 등 추가정보 공개 ▲드라마 CSI와 경찰청 과학수사팀의 비교 ▲사건 해결에 동원된 경찰관, 전경 등의 연인원 ▲수사와 수색에 동원된 전의경의 수기. 용산 참사로 빚어진 경찰의 부정적 프레임을 연쇄살인사건 해결이라는 긍정적 프레임으로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언론이 경찰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니 계속 기사 거리를 제공해 촛불을 차단하는 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연쇄살인범도 그 사람을 체포하고 처벌하여 교도소에 가두면 더 이상 범행을 하지 못한다. 김대두도, 유영철도, 교도소에서 살인하지 않았다.

-매년 한국에는 1천명 이내의 살인사건이 보고된다. 그 살인범죄의 감소에 사형이 효과가 있다는 논자들에게 묻고 싶은 것은, 어느 정도의 집행률 해야 살인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까 하는 점이다. 한국에서 사형집행 시대에도 최근 집행가능한 연 한계치는 10명을 넘어서지 못한 편이다. 현재는 사형의 미집행의 시기가 10년 이상 이어졌으므로 사형확정자는 58명인데, 그 대부분을 사형시킬 수 있다고 믿는 정치인이나 법률가는 없을 것이다. 아무리 많아도 10명 이상을 주장하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그 10명의 처형으로 990명의 살인범죄의 예방이 가능한가? 약간의 영향이라도 주려면 매년같이 10명씩 죽여야 하는가. 예방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그 효과가 1년이상 지속될 리도 없으니 예방효과를 기대할 때마다 일정한 집행을 해야 한다. 1천명의 살인에 몇 명의 사형이 끼칠 영향은 극히 미미하다.

-범죄자는 대개 단기이익 지향적이다. 통제이론에 따르면, 범죄자나 비범죄자나 단기적 이익에 대한 인지는 동일하나, 그 단기적 이익이 초래할 장기적 손해가능성에 대해서 범죄자는 비범죄자보다 둔감하다고 한다. 마약, 술, 담배 등을 생각해보자. 마약, 술, 담배의 단기적 이익은 즉각적이다. 그러나 장기적 손해(건강의 악화, 처벌가능성)에 대한 고려 때문에 비범죄자는 이를 보다 잘 억제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다. 성공한 사람들은 단기적 이익을 참아내고, 장기적 이익을 고려한다. 흉악범들은 그 반대일 것이다. 그들은 살인이 가져올 단기적 이익(심리적이든, 경제적이든 무언가의 이익)에 집착하지, 장기적 손해를 경시한다. 눈앞의 손해, 즉 체포가능성에는 과민하게 반응할 수 있지만, 체포이후 한참의 시간적 경과를 통해 얻어질 최악의 손해(목숨)에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한다. 오늘 폐암으로 죽은 친구의 영안실에 갔다오면서 담배를 억제치 못하는 게 보통사람들인데, 살인범들이 체포확율-사형선고확율-사형집행확율을 치밀하게 계산하여, 사형집행확율의 가능성 때문에 현재의 이익(범죄)을 포기할 것이라는 생각은 살인범들에 대한 과도한 고평가를 하는 셈이다.

-최근에 갑자기 무슨 통계를 들이밀면서, 사형미집행의 10년동안 집행기보다 30% 살인사건이 증가했다고 한다. 우선 그 통계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 더욱이 그런 통계상의 살인범죄수에 최대의 영향요소로 사형을 든다는 것이 건강부회일 수 밖에 없다. 범죄수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기본요소는 인구이다. 범죄가능인구(20대~40대)의 수가 얼마나 증가했는가. 도시화의 비율은 어떠한가, 치안력의 수준은 어떠한가, 가족구조의 변화는 어떠한가, 범행의 수단과 도주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흥기, 차량)는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지역사회(community)가 얼마나 해체되어 있는가 등등이 훨씬 중요한 요소이다. 어느 나라나 살인범죄의 비율은 다른 범죄에 비해 안정적인 편이다. 일본은 인구 10만명당 2인 이내로 가장 낮은 편이고, 한국은 그보다 약간 높은

편이나 서구 각국보다는 훨씬 낮은 편이며, 미국은 유럽보다 훨씬 높다. 이 때, 일본/한국//유럽/미국의 살인범의 편차를 설명할 때, 사형집행의 비율 여부와 상관짓는 연구는 거의 대한 적이 없다. 만약 (일부 정치인들의 주장대로) 한국의 살인건수가 계속 늘어난다면, 그것을 사형과 연결시키는 것은 오비이락/건강부회적 주장일 뿐이며, 다른 인구학적·가족적·사회적·치안적 요인과 연결시켜 분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 ■ “연쇄살인범(魔,) 인간이기를 포기한 악마 혹은 괴물? 아니면 사이코 패스?”

사람을 한명도 아니고 여러명을 연속해서 죽이다니, 이들은 "인간 목숨을 파리 목숨으로 여기는 사형수는 인간이길 포기한 사람"이 아닌가. 살인범이 아니라 살인‘마(魔)’이고, 인간이 아니라 야수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다. 다음과 같이 답하겠다.

-이들이 인간도 아니라면, 그 악마/괴물에 의해 가장 괴롭힘을 당하고 견딜수 없었던 것은 그의 가족들일 것이다. 지금 교도소에 있는 살인범의 가족들의 반응을 살펴보자. 이들 악마와 괴물같이 여겨 죽는 게 낫다고 여길까. 아님은 그들이 사회로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고, 기도하고 있을까.

-연쇄살인범이 내내 살인하고 폭력하고 살아온 것이 아니다. 연쇄살인범(유영철, 정남규, 강호순 등)의 살인범죄기간은 총 2년 이내이고, 그들의 나이는 30대 후반이다. 그들은 어릴 적부터 흥포하고 악마같은 존재였는가. 오히려 어린 시절 어려운 환경 하에서 중첩적 박탈감을 겪고, 사회로부터 냉대받은 불쌍한 영혼이었을 가능성도 다분하다. 그 시기에 그들은 ‘희생자’였다. 그 희생자들 중 일부가 자기에게 쏟아진 학대와 냉대를 차곡차곡 모아 내심에 폭탄을 만들어간다. 자신을 학대한 사회에 복수하는 심정으로 말이다. 그들의 사고의 인과관계는 잘못 짜여졌을 수도 있지만, 그들도 우리 사회의 산물이기도 하다. 범죄한 2년 이내의 기간동안은 ‘악마/괴물’일수도 있지만, 그 이전의 기간동안 내내 ‘악마/괴물’의 생래범죄자는 아닐 것이다.

-범행한 후 뉘우치지도 않는다고들 비난한다. 그 비난의 상당부분은 매스컴의 즉흥적 반응의 탓도 있다. 범행을 별 말 없이 재연하면 ‘태연히’ 재연한다고 하고, 흥분해서 소리를 지르거나 하면 ‘흥포한 면모를 유감없이 드러냈다’고 한다. 체포되어 범행을 추궁 받고 현장검증에 나서서 주위로부터 엄청난 압박을 받을 때, 정상적인 인간의 모습을 보일 길이 없다. 소송과정에서는 내내 초조할 것이고, 초조하지 않으면 냉혈한으로 낙인찍힐 것이다. 그런 그들을 보고 특히 수사기관의 종사자들은 “뉘우칠 줄 모르는, 인간이기를 포기한 악당”으로 생각한다. 정치인들 중 검사 출신들이 유독 그런 표현을 널리 쓰는 것은, 그들이 인간의 한 면, 그 중에서도 그 문제의 범죄의 장면 속에서 그 인간을 보기 때문이다.

-그들은 안 뉘우치는 게 아니다. “전대미문의 대살인마”로 지칭된 김대두는 구치소에서

그야말로 화끈하게 뉘우쳐서 다른 재소자들을 교화시켰다. 사형수들도 처형당할 때는 장기기증을 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종교에 귀의하여 깊은 신앙심을 키우기도 한다. 사형수를 가장 자주 대하는 교도관과 종교위원들에게, 그들은 위험한 악마가 아니다. 그들에게 ‘악마’라 부를 수 있었던 기간은 예컨대 30년 생애 중에, 아무리 길어도 몇 년 만에 불과하다. 그들의 내심도 가변적이고, 반성할 수도 있고, 흥포할 수도 있다. 인간의 마음 속에는 천사와 악마가 공존한다는 것은, 그들 뿐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잠재해 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최근 연쇄살인범과 관련된 용어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이 사이코패스(psychopath)란 심리용어다. 연쇄살인범이 등장하면, 프로파일러가 그 특징을 추출한다고 하면서 설명하고, TV는 이 용어를 즐겨 쓰는 몇몇 학자의 연구실을 찾아가 열심히 그 설명을 옮긴다. 그 학자들에게 한마디는 꼭 하고 싶다. 그 범죄자를 만나 봤느냐고, 만났다면 얼마나 오래 만나고 이야기했느냐고, 통제된 환경하에서 만남을 통해 어떤 진실을 얻을 수 있는가 하고 말이다. 모든 범죄는 서로 다르고, 범죄자마다 다른 사연을 갖고 있다. 법관이 그 범죄자를 단죄하기 위해서는 이미 수십명의 사람들이 모은 증거와 변호인들의 변론을 듣고 종합하여 판단한다. 그 판단도 아직 미흡한 데가 많다. 그런데 직접 만나지도 않고, 수사현장에서 불쑥불쑥 나오는 몇가지 단서를 갖고 사이코패스...운운하는 것은 학문적으로 지나치게 경솔한 처사이다. 강호순 사건의 한 경찰관계자가 말한 대로, “사실 10여 일밖에 안 되는 기간에 그 사람을 파악하는 일이 얼마나 가능하겠는가...언론보도를 보면 도식을 가지고 거기에 끼워 맞추는 게 너무 심하다...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누구도 남들과 다른, 뭔가 다른 특이한 성격을 가진 이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 정의도 제각각이고, 그 연구도 폭넓게 인정되는 것도 아닌, 국내적 연구의 총량은 더더욱 적은, 그러한 내용을 갖고 매스콤을 휩쓰는 그러한 비학문적 경향은 학자의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더욱이 “사이코패스의 전형적 특징을 갖고 있고...”라고 할 때, 그러한 낙인찍기로 인해 일반시민들은 사이코패스의 뜻도 잘 모른채 괴물의 다른 별칭 줌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그리하여 이 “사이코패스라 불리우는 괴물”에 대하여는, 어떠한 인권도 존중할 필요도 없고, 어떤 잔혹한 처벌을 해도 상관없다는 심리를 증폭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 ■ “사형수에게 감옥생활은 특혜, 그들에게 들어가는 세금이 아깝다?”

*-“국민 세금으로 하루 세끼 꼬박 먹으며 사는데다 교도소 예산으로 척추디스크수술까지 받는데 사회정의 관념에선 극히 어긋난 것이 아닌가”*

생활세계에서는 흔히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다. 그런데 문자화되거나 화면화된 속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참으로 문제다. 한 인간의 생명은 전지구보다 무겁다는 데, 의식

주의 기본경비가 아깝다는 게 문명국가의 입법자의 수준이어야 되겠는가 말이다. 그런 시각이라면 밥값이나 축내고 있는 인간들, 예컨대 교도소의 다른 재소자들은 왜 그 대로 놔두어야 하는가? 노숙자들에게 나라에서 밥은 왜 먹여줘야 하는가? 그런 일은 “사회정의 관념에서 극히 어긋난 것”이라고 한다면, 그런 주장에서 나오는 “사회정의”에는 현대 인권국가, 사회국가의 수준에 그야말로 살 자격이 없는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

-우리가 그런 경비가 아까울 정도의 극빈국가에 사는 것도 아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사형수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다음과 같다고 한다.

“사형수 1명에게 연간 들이는 돈을 약 160만원으로 추산했다.

사실 사형수는 일반 수용자와 거의 같은 대우를 받기 때문에 사형수라고 해서 특별히 더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다.

사형수 1명에 들어가는 비용은 2008년 예산 기준으로 연간 160만원인데 식비가 113만 7000원(끼당 1000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의료비 21만원, 연료비 10만 1000원, 수용비 9만4000원, 피복비 5만3000원 등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사형수 58명 전체를 살려두기 위해 국민이 지출해야 하는 돈은 연간 약 9000만원인 셈이다.”

-사형집행은 아무 비용이 들지 않는가. 사형집행기구를 작동시켜야 하고, 사형집행을 시킬 인원이 필요하며, 사회집행에 따른 공포를 관리할 비용이 필요하고, 사형수를 처리할 비용이 필요하다.

-어떻게 인간의 생명을 비용 개념으로 접근하는가. 소위 선진국 중 사형을 가장 많이 집행하는 미국에서도, 사형수는 평균 15년씩 대기한다. 집행된 자 중에도 그렇다는 것이다. 그리고도 사형의 남용이 문제되고 있다. 한 국가의 품위와 문명화를 위해 그 정도의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인가. 19세기 이후 전세계의 국가는 사형 대신 거대한 감옥의 축조 및 운영비용을 감당하기로 약속하고, 이를 실행해왔다. 그러한 진전을 무시하고, 이들을 국가예산이나 축내는 존재로 묘사하는 수준의 국회의원을 우리는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 ■ 사형집행도 안하면 피해자(가족)들은 누구에게 보상받아야 하는가?

-피해자 가족은 사형집행으로 돌아오는 이익은 무엇인가. 정의의 회복, 복수심의 만족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이다. 장기적으로 그들에게 남는 이익이 무엇일까 생각해볼 일이다.

-피해자 가족은 당장 절실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우리의 이웃들이다. 그들은 가족의 상실로 인한 행언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 공포와 불안정 속에 놓여있다. 그들에게 따

뜻한 연대와, 눈물과 슬픔을 함께해야 한다. 물질적 피해의 회복에는 전사회와 국가가 나서야 한다. 이것은 공동체와 국가의 기본적 임무이다.

-가해자가 체포되고 처벌되고, 중범죄일 경우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로 (완화된) 복수로서의 응보적 심리적 만족감은 얻을 수 있다. 범죄자가 처형당함으로써 피해자가족이 원상회복이 곧바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일차적으로는 악이 응징되고 정의가 바로 서는 것을 확인하는 것, 자신들이 당한 이유없는 고통에 대한 관심과 배상이 주어지는 것이 선결이다. 만일 어떠한 관심과 연대와 배상도 주어지지 않을 때, 피해자(가족)들은 그 모든 고통의 원인제공자로서 범죄자에 대한 복수의 감정이 지배할 수 밖에 없다. 피해자의 가족들이 범죄자에 대한 복수의 감정에 압도되어 있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그것은 '범죄자' 탓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수감정을 누그러뜨리지 못한 우리 사회와 국가의 실패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 "살인범의 인권을 걱정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망각하고 있다"(김문수)고 지탄하는 정치인들은, 자신의 직분을 피해자를 위한 구조와 치유의 정책을 활성화하는 데 가치있게 써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피해자를 내세워 살인범의 처형으로 해법을 찾는 것은, 정치인 자신의 정치적 효과를 위함이지, 진실로 피해자를 위한 것은 아니다.

#### ■ "국제적 추세가 무엇 그리 중요한가? 국제여론에 별 신경쓸 것 없다?"

- "사형폐지국은 한 인권단체의 임의적인 분류일 뿐"인가. 한 인권단체라 함은 엠네스티 인터네셔널을 지칭하는 듯하다. 그런 주장은 정말로 무지의 소치이다. 매년 사형에 대해 국제결의를 하는 UN은 한 인권단체일 뿐인가.

- 사형폐지는 예민한 국제적 이슈이다. 각국의 인권수준을 논하는 가장 원초적 지표 중의 하나가 사형집행을이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 전세계적으로 사형폐지국이 계속 증가하여, 이제는 존치국의 수를 압도하고 있다.

- 사형의 존폐 여부는 국가간에도 주요한 이슈가 되어 있다. EU에 속한 모든 나라는 사형을 폐지하고 있으며, EU 가입 심사에서 사형폐지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미국의 살인범죄자가 유럽으로 도주하면 유럽국가는 미국에 그 범죄자를 인도하지 않는다. 사형이란 야만적 제도를 존치하는 미국에 보내면, 마치 인간을 살인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미국의 수모는 그에 그치지 않는다. 얼마전 미국에서 살인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자가 한국으로 왔다.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의 유럽국가와 비슷한 사유로, 범죄혐의자를 미국으로 강제송환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결정했다.

- 우리는 북한의 인권수준에 대해 예민한 관심을 갖고 있다. 북한도 남한의 인권수준의 열악성을 오래동안 공격해오다, 지금은 그러한 공격무기가 거의 사라졌다. 북한의 공개 처형, 사형집행을 들어 우리가 비판할 때 지금 우리는 확실한 명분상의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 우위의 가장 확실한 지표가 남한에서는 사형미집행상태라는 것이다. 북한이 남한에 대하여 "왜 너희는 정치범을 처형하고, 못사는 사람들을 잡아서 처형하느냐" 라

는 비난을 전혀 할 수 없는 것이다. 반면 우리는 북한의 인권수준, 특히 공개처형 및 정치범수용소의 존재를 들어 계속 비판한다. 남북한의 예민한 관계에서도, 인권의 우위는 경쟁에서 가장 손쉬운 비교대상이 된다. 사형을 재집행하게 되면, 국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에서, 그동안 소중히 쌓아올린 성과를 일거에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 “140개국 이 법률상, 사실상 사형을 폐지했다고 해도, 미국, 일본, 중국 등 우리와 밀접한 나라들은 사형을 존치, 집행하고 있지 않는가?”

우선 미국의 경우를 보자. 미국은 1960년대까지 계속 사형집행건수를 줄여가고 있었고, 1967년부터 10년간 사형의 집행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재집행을 개시한 뒤 사형집행은 2000년까지 꾸준히 늘어가는 추세를 유지하다가, 2000년 이후 그 숫자를 약간 감소시키는 수준이었다. 다음은 미국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이다.

-1건의 재개가 수백건의 재개의 발판이 된다. 따라서 어떤 한건도 사형시켜서는 안된다. 유명철만은 처형해야 하지 않느냐 하고 사형을 재개를 하는 순간, 한명에서 두명으로...계속 늘어날 수 있다.

-미국 전부가 사형존치/폐지의 어느 쪽에 있는 것이 아니다. 38개주는 사형을 존치하고, 12개주 및 워싱턴(수도)는 사형제도가 없다. 미연방은 사형을 존치하고 있다.

-1976년부터 지금(04년)까지 총 921명의 사형이 집행되었다. 최근의 통계를 보면 1999년에 98명, 2000년에 85명, 01년에 66명, 02년에 71명, 03년에 65명의 사형집행이 이루어졌다. Texas주는 이 기간동안 총 323명이 집행되어 전체 사형수의 1/3이 넘는다. 그리고 버지니아, 오클라호마, 미주리, 플로리다 등이 다수 집행주이다. 주로 남부에 집중되어 있다. 북동부 주들의 사형집행은 전체의 1%도 안된다.

-사형확정된 자 중 무고한 자(innocence)로 밝혀져 석방된 자가 총 100명을 넘어섰다. 최근 DNA 검사 등 새로운 과학수사기법으로 재심리한 결과 무죄석방자가 증가하고 있다.

-사형집행이 가장 많은 남부 주들은 가장 높은 살인율을 기록한다. 사형집행이 가장 낮은 북동부 주들은 가장 낮은 살인율을 기록하고 있다.

-전문가 800여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사형의 살인억제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2%인 반면, 84%의 전문가들은 살인억제효과가 없다고 답하고 있다.

-2000년 이후의 집행감소와 함께 사형의 집행정지조치(moratorium)가 퍼져가고 있다.

오판가능성이 생각보다 높다는 점, 사형수의 구성을 보면 인종차별적 요소가 적지 않다는 점 등이 비판받고 있다.

-사형 뿐 아니라 미국의 형사사법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인구 10만명당 구금시설 수용자수에서 가장 높은 나라가 미국이다. 미국은 유럽은 물론, 한국에 비해 7배 이상의 수용자수를 기록하고 있다. American Gulag으로 불리우고 있으며, 별로 개선될 기미도 없다.

-이렇게 구금시설의 운용 및 구금시설의 여건 악화는 국제적 망신거리로 되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이 관장하는 외국의 수용시설에도 그런 면모를 보인다. 관타나모 수용소의 반인권적 처우, 이라크의 아부그라이브 수용소에서의 반인권적 처우로 세계적인 위신 추락을 겪었다. 1980년대 이후 “미국 예외주의”라 불리우는 미국적 현상은 모델이 아니라 반면교사이다

·  
다음 일본의 경우를 간단히 보자.

일본: 1980년대 사형미집행의 수준으로 거의 도달. 그러나 최근 10년간의 한국처럼, 장기미집행의 수준이 되지는 못했다. 그러다 1990년대 이후 사형이 재개되었다. 일단 재개되자 증가일변도를 걷고 있다. 최근에는 연 집행건수가 10명을 넘어서고 있다. 범세계적 추세에 역진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정치의 보수화, 우경화가 한 원인이 된다.

-문지마 살인 등 흉악범이 나타나고, 여론이 중형을 지지한다.

-정치인의 포퓰리즘이 거기에 가세했다. 하토야마 전 법무상의 개인적 취향도 가세하여 사형집행을 가속화했다. 일본내에서 그에 대한 효과적인 제어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일본의 학자들은 한국의 사례를 부러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일본의 예가 한국의 미래가 아니라, 한국의 예가 일본의 미래라는 것이다. 한국의 사법개혁(가령 국민참여재판, 형사소송법의 개혁, 양형기준 도입)이 일본에 소개되고, 하나의 바람직한 입법례로 거론되고 있다. 100여년의 한일관계사에서 이런 현상은 처음이다. 사형제도의 현재와 미래 역시 마찬가지다. 일본, 대만이 우리를 닮아오고, 중국과 북한이 그 뒤를 이어 인권국가로 다가올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견인차적 사명이 있다고 생각한다.

## 유럽지역에서의 사형제 현황과 한국

홍성수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 1. 유럽지역에서의 사형제 현황

- 유럽연합 회원국과 유럽평의회 회원국은 모두 사형 폐지국가임.
- 유럽연합/유럽평의회 회원국은 아니지만, 유럽‘지역’에서 중 사형제가 유지되고 있는 곳은 벨라루스(Belarus)가 유일함. (중앙아시아국가로 분류되기도 하는) 카자흐스탄은 평시 사형제 폐지국.<sup>8)</sup>
- 유럽지역에서 사형 집행은 2003년 카자흐스탄과 1997년 우크라이나가 마지막(벨라루스 제외)이며, 러시아는 실질적 폐지국으로 분류됨.
- 라트비아는 1999년 사형폐지 선택의정서 6호를 비준하면서 평시 사형제를 폐지했고, 2012년 사형폐지 선택의정서 13호를 비준하면서 완전 폐지국가가 되었음. 유럽연합에는 2004년 가입.
- 북서유럽국가들은 대부분 1900년대 중후반에 사형제도를 폐지했고 (영국

8) 유럽연합(European Union): 1993년 설립. 독일, 프랑스, 영국, 아일랜드,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키프로스, 몰타,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등 28개국 회원국.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1949년 설립. 유럽연합 회원국뿐만 아니라, 스위스, 노르웨이, 러시아 등 47개국 회원국

1969년, 스위스 1942년, 스페인 1978년, 노르웨이 1902년, 프랑스 1981년). 동 유럽국가들은 1990년대 후반에 폐지했음 (체코 1990년, 루마니아 1990년, 슬로바키아 1993년, 터키 2002년)

- 프랑스의 경우에는 헌법에 명문규정을 두고 있음: ‘어느 누구도 사형선고를 받지 아니한다’ (66-1조)

- ① “사형은 비인간적이며 굴욕적인 처우이며, 범죄예방효과도 입증되지 않았으며, 되돌릴 수 없고 치명적인 사법판단 오류를 허용한다.” (유럽연합과 유럽평의회 입장)

→ 유럽에서 사형폐지는 상호승인과 상호협력을 위한 최소한의 전제가 되고 있음.

## 2. 유럽지역 사형폐지 관련 규범

### 2. 1) 유럽연합 기본권헌장 (EU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① Article 2 - Right to life

② 1. Everyone has the right to life

③ 2. No one shall be condemned to the death penalty, or executed. (누구도 사형을 선고받거나 사형집행을 당해서는 안된다)

④

- 유럽연합 기본권헌장은 아직 법적 효력은 없는 상태임.

### 3. 2) 사형 관련 유럽 선택의정서

#### ① 사형폐지에 관한 유럽인권협약 제6의정서

*Protocol No. 6 to th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concerning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1983)*

- 선택의정서 6호는 평시 사형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러시아(서명은 함)를 제외한 모든 유럽평의회 회원국들이 비준했음.

#### ② 사형폐지에 관한 유럽인권협약 제13의정서

*Protocol No. 13 to th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concerning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in all*

*circumstances (2002)*

- 선택의정서 13호는 전시, 평시 불문하고 사형제를 폐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아제르바이잔, 러시아, 아르메니아(서명은 함)를 제외한 유럽평의회 회원국들 비준했음. 폴란드가 가장 최근인 2014년 이 선택의정서를 비준했음.

\* 2007년 유럽각료회의는 10월 10일을 유럽 사형폐지의 날로 선포한 바 있음.

## 2. 최근 쟁점: 유럽연합 회원 후보국인 터키의 사형제 부활 논의

- 터키는 1987년 유럽연합의 전신인 EEC 가입을 추진한 이래로 유럽연합 가입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며, 인권 보장이 가입을 위한 중요한 선결과제가 되어 왔음 (아르메니 제노사이드 인정, 성소수자 인권, 사상의 자유, 여성 인권, 양심적 병역거부 등).

- 터키는 유럽연합 가입을 위해 2002년 평시 사형제를 폐지했고, 2004년에는 사형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2006년에는 유럽인권협약 13의정서도 비준한 바 있음.

- 하지만, 2016년 에르도안 대통령이 쿠데타를 진압하면서 사형제 부활 논의를 제기함. 이에 유럽연합은 터키가 사형제를 부활시킬 경우 유럽연합 가입협상은 즉각 중단된다는 점을 경고함.

① “사형제를 도입하는 나라는 어떠한 나라도 유럽연합 회원국이 될 수 없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정책 고위대표)

“유럽연합은 사형제에 대한 분명히 반대가 유럽연합의 필수적인 요소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정책 고위대표)

“(터키의) 사형제의 재도입은 유럽연합 가입을 위한 성공적인 협상을 저지할 것이다” (독일 외무장관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 3. 유럽연합의 사형폐지원칙과 한국

② <범죄인인도에 관한 유럽협약> 제11조 (사형): 인도청구된 범죄가 청구국의 법에 의해서 사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이나 그러한 범죄에 관하여 피청구국의 법에 의하여는 사형으로 처벌되지 않거나 일반적으로 집행되지 않는 경우, 청구국이 피청구국에게 사형이 집행되지 않을 것임을 믿기에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 한 인도청구는 거절될 수 있다.

- 2011년 3월 10일 국회는 <범죄인인도에 관한 유럽 협약>을 비준한 바 있으며, ‘협약 가입시 선언 및 유보사항’은 “대한민국이 제11조에 따라 보증을 하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이 사형을 선고하더라도 그 사형은 집행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즉, 사형집행을 유보한다는 보증이 없이는 유럽으로부터 범죄인을 인도할 수 없다는 것임.

- 범죄인인도에 관한 유럽 협약 가입동의안에 대한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심사보고서(2010.12)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2010. 11)는, 1) 사형을 명시한 국내법과 충돌할 수 있고, 2) 사형을 선고하는 법원의 의지/권한을 제할 수 있으며, 3) 유럽에서 인도된 범죄자는 사형집행을 면하고 유럽 이외의 국가에서 인도되거나 국내에서 체포된 중범죄자에게만 사형이 집행된다면 불공평한 일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하면서, 유럽연합과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다수의 범죄자 인도 불가)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할 것을 지적하고 있음.

- 국회에서는 사형제를 두고 있는 국내법과 상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여러 차례 논의한 바 있으나 결과적으로 비준동의한 것임.)<sup>9)</sup>

9)

[제294회 국회 정기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회의록 제14차 (2010년 11월 29일)]

유기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조약이 국회에서 비준 통과가 됐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죄를 지은 범인이 유럽에 있는 나라로 도피를 하면…… 다른 나라에 있는 범죄인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반면에, 집행도 가능한 반면에 유럽으로 도망가면 사형 집행을 못 하는 그런 차별적인 대우를 하게 되는……

외교통상부국제법률국장 이기철: 예, 지금 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차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294회 국회 정기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회의록 제16차 (2010년 12월 7일)]

법안심사소위원장 유기준: 셋째, 범죄인인도에 관한 유럽 협약 가입동의안 및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유럽 협약 가입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사형불집행에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국내법과의 충돌 문제, 사형집행의 형평성 문제 등을 논의하였으나, 개별적인 사안에 대하여 유럽 측과의 사법공조를 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가 반드시 사형불집행을 보충할 필요성이 없다는 점,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의 실현의 이익 및 우리나라와 유럽 협약 당사국 간의 공조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협약에의 가입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제294회 국회 정기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회의록(법안심사소위원회) 제1차 (2010년 12월 7일)]

외교통상부제2차관 민동석: 보다 근본적인 문제인 국내법과의 상충 문제, 형평성 문제 등에서는 첫째로는 현실적으로 우리 정부가 1997년부터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미 16개 국가하고 같은 조건으로 국회 동의를 받아서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한 선례가 있다는 것하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범죄자가 유럽으로 도망가 가지고 사형을 면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취지의 말씀하고 관련해서는 실제로 그럴 경우는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국내에서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고 또 그와 반면에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우리가 범죄인을 인도받는다는 그 실익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사형 불집행과 관련한 유보사항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이 조약이 맺어지더라도 사안별로 보증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법무부국제형사과장 권정훈: 예, 그렇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증을 제출하면 사형을 집행할 수 없다, 이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기준: 그러면 제출 안 하면 유럽에서 인도 안 하겠네요?

법무부국제형사과장 권정훈: 인도를 안 합니다. 그건 지금 조약이 없어도 유럽에서는 인도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신낙균 위원: 그러면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요?

- 이러한 협약을 비준한 상황에서, 국내 범죄자와 유럽 이외 국가에서 인도한 범죄자에게만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형평성에 크게 어긋나게 됨. 결국 한국에서 사형집행은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부분을 대한민국 국회가 충분한 논의 끝에 승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결국, 2011년 범죄인인도에 관한 유럽협약 국회 비준동의에 따라, 한국에서의 사형집행은 사실상 어렵게 되었으며, 국회도 이러한 부분을 승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법무부국제형사과장 권정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약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것 때문에 일반 범죄인도 인도를 못 받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 토 론 문



이유정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법무법인 원 변호사

1. 한국에서는 1997년 12월 30일 김영삼 정부에서 23명의 사형수에 대한 사형 집행이 있었던 것을 끝으로 지금까지 거의 20년 동안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 그 동안 수많은 끔직한 살인 사건들이 발생했고 그때마다 범인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음에도 실제로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던 것은, 사형제도가 생명을 박탈하는 극단적인 형벌이고 사형제도 자체의 범죄예방효과가 거의 없다는 점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즉 우리나라 일반 국민들의 대부분은 ‘사형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에는 선뜻 동의하지 않지만, 실제로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꺼려하는’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생명을 부정하는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불법적 효과로서 지극히 한정적인 경우에만 부과되는 사형은 죽음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 공포심과 범죄에 대한 응보욕구가 서로 맞물려 고안된 필요악으로서 불가피하게 선택된 것이며 지금도 여전히 제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당화 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 1996. 11. 28.선고95헌바1 결정)고 판단한 바 있다.

형벌의 응보적인 기능이나 일반예방적인 기능이 있다는 점은 동의하지만, 끔직한 살인죄를 저지른 범인을 똑같은 방식(살인이라는 방식)으로 처벌하는 것이 과연 문명국가의 형벌로서 타당한가라는 점에 대해서는 그 동안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고, 국제인권규범은 오래 전부터 생명을 빼앗은 사형제도를 폐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 또한 세계적으로 100여개의 국가가 국제인권규범에 따라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길을 선택했는데, 이러한 국가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끔직한 범죄가 더 많이 발생했다는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과연 사형제도를 존치시킬 필요가 있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은 위 헌법재판소의 소수의견에서 찾을 수 있다.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과 보호의 요청은 형사입법, 형사법의 적용과 집행의 모든 영역에서 지도적 원리로서 작용한다. 그러므로 형사법의 영역에서 입법자가 인간의 존엄성을 유린하는 악법의 제정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박탈 내지 제한하는 것이나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형벌제도를 채택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에 반한다. 이는 극악한 범죄를 범함으로써 스스로 인간임을 포기한 자라도 여전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인간 존재인 한, 그에 대하여도 피해자 내지 그 가족 또는 사회의 보복감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또는 유사범죄의 일반적 예방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비인간적인 형벌을 적용해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형벌로서의 사형은 자유형과는 달리 사형선고를 받은 자에게 개과천선할 수 있는 도덕적인 자유조차 남겨주지 아니하는 형벌제도로써 개인을 전적으로 국가 또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한 단순한 수단 내지 대상으로 삼는 것으로서 사형수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다. 사형제도는 나아가 양심에 반하여 법 규정에 의하여 사형을 언도해야 하는 법관은 물론, 또 그 양심에 반하여 직무상 어쩔 수 없이 사형의 집행에 관여하는 자들의 양심의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비인간적인 형벌제도이기도 하다.’

3. 사형제도의 폐지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사람들도, 막상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자가 일정 기간 복역을 마치고 출소하여 다시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심정적 거부감과,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형제도 폐지에 적극 찬성하지 못하는 점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법감정을 고려한다면 사형제도 폐지의 대안으로서 절대적 종신형 제도의 도입이 설득력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1)사형제도를 폐지하더라도 흉악한 범죄자를 세상으로부터 격리할 수 있다는 점, (2)무기징역을 선고받더라도 20년이 지난 후 가석방으로 석방될 수 있는데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것을 감안한다면 20년이라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장기간은 아니라는 점, (3)형벌이 본질적으로 응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4) 절대적 종신형 제도 역시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형벌이기는 하나 사형과 같이 생명권을 박탈하는 정도는 아니라는 점, (5)사형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과도기적인 전략으로서 일반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점 등이 그 근거가 될 수 있다.

4. 사형제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극단적인 형벌이고,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지도 불분명하며 범죄자를 교화할 수도 없는 형벌이다. 다만 형벌이 본질적으로 응보의 기능이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의 법감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사형제도 폐지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설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사형제도의 폐지로 인해 흉악범죄가 증가할 것이라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절대적 종신형제도와 같은 대안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는 20년이라는 기간 동안 사형폐지 논의를 거치면서 사실상 사형제도 폐지를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수차례에 걸친 사형제도 폐지 법안 발의를 통해 법률로도 사형제도 폐지를 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서 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더욱 발전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 전 세계의 사형폐지 및 집행 현황



김희진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

2015년 한 해 동안 세계적으로 사형집행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며 25년만에 가장 많은 사형수가 처형되었다. 국제앰네스티가 세계 사형제도 현황 보고서를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급증의 원인은 주로 이란,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가 일조했다.

2015년 처형된 사형수는 최소 1,634명으로, 작년 대비 50% 이상 증가했으며 국제앰네스티가 1989년부터 기록한 이래 가장 많은 수이다. 이 통계는 중국의 사형집행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사형 관련 통계를 기밀로 취급하는 중국에서는 수천 명 이상이 처형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란,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는 전례 없는 수준으로 사형을 집행했으며, 매우 불공정한 재판으로 처형된 경우도 많았다. 다행히도 사형존치국의 수는 적으며, 점차 고립된 소수집단이 되고있다. 다수의 국가들이 사형에 등을 돌렸고 2015년 한 해에만 4개국 이처럼 야만적인 처벌을 법적으로 완전히 폐지하는 데 합류했다.

4개국에서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제 폐지

수리남  
피지  
콩고공화국  
마다가스카르

STOP THE #DEATHPENALTY AMNESTY INTERNATIONAL

2015년 최다 사형집행국 TOP 5

중국 1000+  
이란 977+  
파키스탄 329  
사우디아라비아 158+  
미국 28

STOP THE #DEATHPENALTY AMNESTY INTERNATIONAL

사형제 완전 폐지 102개국



세계 절반 이상



1,634+명  
25개 국가에서 처형된 사람 수

2014년보다 54% 증가한 수치

STOP THE #DEATHPENALTY AMNESTY INTERNATIONAL

세계적으로 사형집행이 증가하는 데 주로 일조한 3개 국가가 있는데, 이는 2015년 총 사형집행 건수(중국 제외)의 89%를 차지한다.

파키스탄은 2014년 12월 민간인에 대한 사형집행 유예를 해제한 이후 사형집행을 계속해서 남발하고 있다. 2015년에 320명 이상이 교수대로 보내졌는데, 이는 국제앰네스티가 파키스탄을 기록한 이래 가장 많은 숫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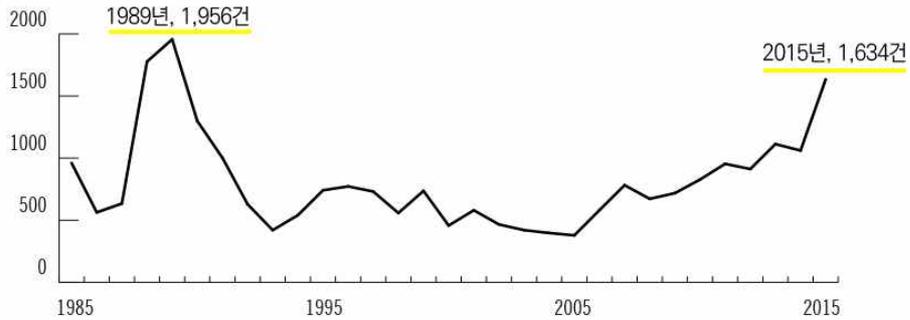
이란은 지난해 최소 743명을 처형한 데 이어 2015년 최소 977명의 사형을 집행했으며, 압도적인 대부분의 경우는 마약 관련 범죄로 사형이 선고됐다. 이란은 세계에서 마지막 남은 청소년 범죄자 사형집행국 중 하나이기도 한데, 이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 이 나라는 2015년, 유죄를 선고받을 당시 18세 이하였던 4명에게도 사형을 집행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작년에 2014년 수치 대비 76% 증가한 최소 158명을 처형했다. 대부분 참수형을 당했지만, 사형수를 총살하거나 시신을 공공장소에 전시하기도 했다.

이집트와 소말리아 등의 국가에서도 사형집행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 1985-2015\* 전 세계 사형집행 추이

\*중국을 제외한 최소 수치



STOP THE  
#DEATHPENALTY



### 사형집행국(2015)

Afghanistan (1), Bangladesh (4), Chad (10), China (+), Egypt (22+), India (1), Indonesia (14), Iran (977+), Iraq (26+), Japan (3), Jordan (2), Malaysia (+), North Korea (+), Oman (2), Pakistan (326), Saudi Arabia (158+), Singapore (4), Somalia (25+: Federal Government of Somalia 17+; Somaliland 6+; Jubaland 2+), South Sudan (5+), Sudan (3), Taiwan (6), UAE (1), USA (28), Viet Nam (+) and Yemen (8+).

### 사형선고국(2015)

Afghanistan (12+), Algeria (62+), Bahrain (8), Bangladesh (197+), Belarus (2+), Botswana (1), Brunei Darussalam (1), Burkina Faso (2), Cameroon (91+), Chad (10), China (+), DRC (28), Egypt (538+), Ethiopia (3), Gambia (3), Ghana (18), India (75+), Indonesia (46+), Iran (+), Iraq (89+), Japan (4), Jordan (3+), Kenya (30), Kuwait (14), Laos (20+), Lebanon (28), Libya (10+), Malawi (3), Malaysia (39+), Maldives (3), Mali (10), Mauritania (5), Mongolia (2+), Morocco/Western Sahara (9), Myanmar (17+), Nigeria (171), North Korea (+), Pakistan (121+), Palestine (State of (12+: Hamas authorities in Gaza 10+; Palestinian authority in West Bank, 2+), Qatar (9), Saudi Arabia (6+), Sierra Leone (13), Singapore (5+),

Somalia (5+: Federal Government of Somalia 4+; Somaliland 1+), South Korea (1), South Sudan (17+), Sri Lanka (51+), Sudan (18), Syria (20+), Taiwan (9), Tanzania (5+), Thailand (7+), Trinidad and Tobago (9), Tunisia (11), Uganda (1), UAE (8), USA (52), Viet Nam (47+), Yemen (+), Zambia (7+) and Zimbabwe (2+)

사형을 집행한 국가의 수도 2014년 22개국에서 2015년 25개국으로 증가했다. 2014년 단 한 건의 사형집행도 하지 않았으나 2015년 재개한 국가는 최소 6개국으로, 이 중 차드의 경우는 10여년 만에 처음으로 사형을 집행했다.

2015년에 사형을 가장 많이 집행한 5개 국가는 중국, 이란,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순이었다.

중국,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등 다수의 국가에서는 여전히 마약 밀매, 부정부패, “간통”, “신성모독” 등 국제법상 사형을 제한하고 있는 기준인 “매우 중대한” 범죄에 부합하지도 않는 범죄로 사형집행을 계속했다.

## 극과 극이 공존한 2015년

이러한 걸림돌에도 불구하고 2015년 세계는 사형폐지의 길로 계속해서 나아갔다. 지난해 이룩한 성과를 통해 희망을 얻었고, 이제 사형을 고수하는 국가는 고립된 소수가 되었음을 보여줬다.

2015년 피지, 마다가스카르, 콩고, 수리남 4개국이 법적으로 사형을 완전히 폐지했다. 예서도 사형을 폐지한 신규 형법안이 통과돼 2016년 말에 발효될 예정이다.

이로써 법적 사형폐지국은 102개국으로, 처음으로 세계의 과반을 차지하게 되었다. 현재 세계 140개국이 법적 또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다.

## 지역별 현황

### 미주 지역

미주 지역에서는 사형 집행 중단을 향한 진전을 이어갔다. 7년 연속으로 미국이 사형을 집행한 유일한 국가이다. 미국은 28건을 집행했는데, 이는 199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다. 52건의 사형 선고는 1977년 이후 가장 적은 수치이다. 펜실베이니아주는 사형집행 유예를 선포했고, 총 18개주가 사형을 완전 폐지했다.

트리니다드토바고는 미국을 제외하고 미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사형을 선고했다.

#### 아시아태평양 지역

2015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사형집행 건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파키스탄이 주된 원인인데, 국제앰네스티의 조사에 따르면 파키스탄은 이 지역의 총 사형집행 건수 중 약 90%를 차지했다.(중국 제외) 방글라데시, 인도, 인도네시아는 사형집행을 재개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한 해 동안 마약 관련 범죄로만 14명이 처형됐다. 중국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형을 집행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중국에서 2015년 수천여 명이 처형되고, 수천여 명에게 사형이 선고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근 수 년간 중국의 사형집행 건수가 감소한 조짐이 나타났지만, 사형 관련 정보가 기밀로 유지되고 있어 이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 유럽, 중앙아시아 지역

벨라루스는 이 지역에서 유일하게 사형을 적용한 국가였다. 2015년 사형을 집행하지는 않았지만, 최소 2건 이상의 사형을 선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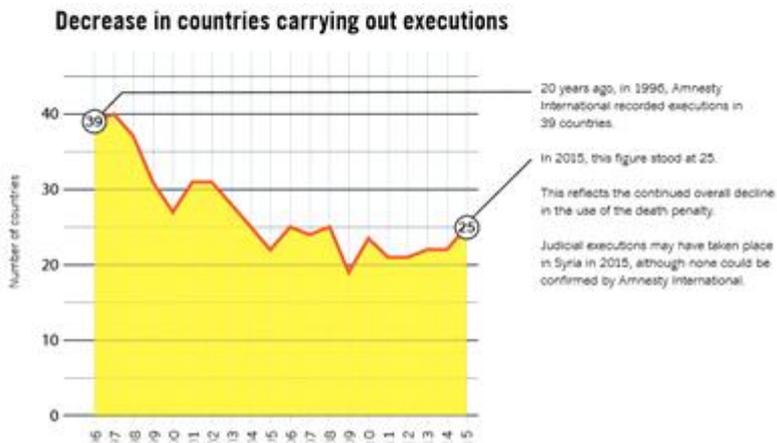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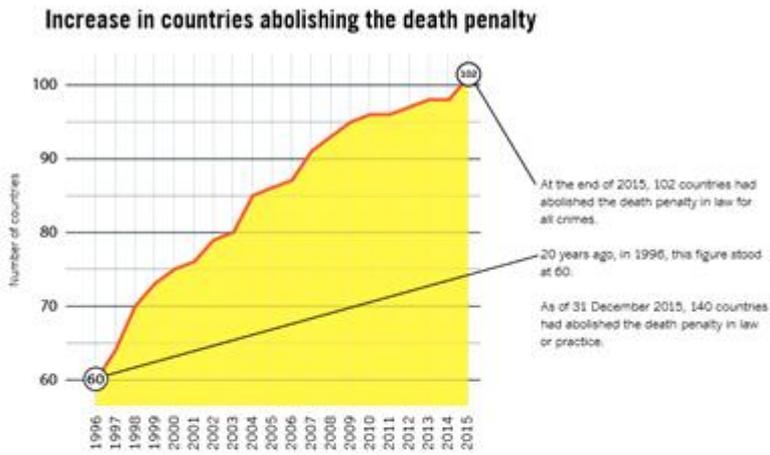
####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

2015년 이 지역에서 사형제도 사용이 급증한 것은 이미 심각하게 우려할 만한 이유가 된다. 오만과 이스라엘을 제외한 이 지역의 모든 국가가 사형을 선고했고, 8개국이 사형을 집행했다. 2014년 기록보다 26% 증가한 1,196명 이상이 처형됐는데, 주로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사형 집행 급증이 증가 원인이었다. 이 지역에서 기록된 총 사형집행 건수 중 82%가 이란에서 이루어졌다.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긍정적, 부정적인 양상이 동시에 나타났다. 마다가스카르와 콩고가 사형을 완전히 폐지했고, 사형을 선고한 숫자는 주로 나이지리아에서 급감한 덕분에 2014년 909건에서 2015년 443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사형집행 건수 역시 2014년 46건에서 43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그러나 차드의 경우 8월, 무장단체 보코하람 소속으로 추정되는 용의자 10명을 총살하면서 12년만에 처음으로 사형집행을 재개했다.

## DEATH PENALTY TRENDS 1996-2015



2015년12월31일 현황

모든 범죄에 대한 폐지국: 102

일반범죄에 대한 폐지국: 6

사실상 폐지국: 32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 폐지국: 140

존치국: 58

### 1. 모든 범죄에 대한 폐지국

Albania, Andorra, Angola, Argentina, Armenia, Australia, Austria, Azerbaijan, Belgium, Bhutan, Bolivia, Bosnia and Herzegovina, Bulgaria, Burundi, Cambodia, Cabo Verde, Canada, Colombia, Cook Islands, Congo (Republic of), Costa Rica, Côte d'Ivoire, Croatia, Cyprus, Czech Republic, Denmark, Djibouti, Dominican Republic, Ecuador, Estonia, Finland, Fiji, France, Gabon, Georgia, Germany, Greece, Guinea-Bissau, Haiti, Holy See, Honduras, Hungary, Iceland, Ireland, Italy, Kiribati, Kyrgyzstan, Latvia, Liechtenstein, Lithuania, Luxembourg, Macedonia, Madagascar, Malta, Marshall Islands, Mauritius, Mexico, Micronesia, Moldova, Monaco, Montenegro, Mozambique, Namibia, Nepal, Netherlands, New Zealand, Nicaragua, Niue, Norway, Palau, Panama, Paraguay, Philippines, Poland, Portugal, Romania, Rwanda, Samoa, San Marino, Sao Tome and Principe, Senegal, Serbia (including Kosovo), Seychelles, Slovakia, Slovenia, Solomon Islands, South Africa, Spain, Suriname, Sweden, Switzerland, Timor-Leste, Togo, Turkey, Turkmenistan, Tuvalu, Ukraine, UK, Uruguay, Uzbekistan, Vanuatu, Venezuela.

### 2. 일반범죄에 대한 폐지국

Countries whose laws provide for the death penalty only for exceptional crimes such as crimes under military law or crimes committed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Brazil, Chile, El Salvador, Israel, Kazakhstan, Peru.

### 3. 사실상 폐지국

Algeria, Benin, Brunei Darussalam, Burkina Faso, Cameroon, Central African Republic, Eritrea, Ghana, Grenada, Kenya, Laos, Liberia, Malawi, Maldives, Mali, Mauritania, Mongolia, Morocco, Myanmar, Nauru, Niger, Papua New Guinea, Russian Federation,<sup>196</sup> Sierra Leone, South Korea, Sri Lanka, Swaziland, Tajikistan, Tanzania, Tonga, Tunisia, Zambia.

#### 4. 존치국

Afghanistan, Antigua and Barbuda, Bahamas, Bahrain, Bangladesh, Barbados, Belarus, Belize, Botswana, Chad, China, Comoros,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Cuba, Dominica, Egypt, Equatorial Guinea, Ethiopia, Gambia, Guatemala, Guinea, Guyana, India, Indonesia, Iran, Iraq, Jamaica, Japan, Jordan, Kuwait, Lebanon, Lesotho, Libya, Malaysia, Nigeria, North Korea, Oman, Pakistan, Palestine (State of), Qatar, Saint Kitts and Nevis, Saint Lucia,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Saudi Arabia, Singapore, Somalia, South Sudan, Sudan, Syria, Taiwan, Thailand, Trinidad and Tobago, Uganda, United Arab Emirates, USA, Viet Nam, Yemen, Zimbabwe.